

경기도도서관총서 6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윤명희·이영옥·심승희·황수경·정종모

Contents

I.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 007

-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 사례 - 윤명희, 이영옥, 심승희

1. 왜 작은 도서관인가? ... 009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 015
3. 작은도서관의 유형 ... 024
 - 3-1. 공립 작은도서관
 - 3-2. 사립 작은도서관
4.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 027
 - 4-1.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수립 및 집행 현황
 - 4-3. 경기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설문조사
 - 4-4. 총괄 시사점
5.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집행 사례 ... 070
 - 5-1. 파주시 현황
 - 5-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5-3. 사립 작은도서관의 협력활동

- 5-4.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 5-5.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 5-6. 파주시 사례 정리
- 5-7. 성과와 과제

6.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 128

II. 어린이와 함께 꿈꾸는 작은도서관 ... 179

- 파주시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운영 사례 - 황수경

III. 도서관을 돕는 시민참여 활동 ... 219

-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동 사례 - 정종모



I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추진 사례 -

윤명희, 이영옥, 심승희



1 왜 작은도서관인가?

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분석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공약 중 58%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그중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www.libraryforum.kr). 이런 공약은 민선 5기 취임 이후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10년 10월 고양시에는 고양시 작은도서관협의회와 고양신문사가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시민공청회가 열렸고, 인천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원 간담회가 있었다(인천시 어린이도서관협의회 2010). 그 외에 성남시, 청주시, 충주시, 군포시, 시흥시, 고양시,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파주시에 자료 요청을 해 온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제안에 의해 도의원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주관한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전라북도,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 관악구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들 자치단체의 사례에는 모두 작은도서관이 책 읽는 도시 만들기의 주요한 거점이 되고 있거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2010).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관심은 그동안 도서관에서 일해 왔던 도서관 전문가나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들, 도서관이란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았던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 시민들은 왜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것일까? 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의회의원, 시장 등 자치단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까지 왜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왜 작은도서관이어야 하는 것일까?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제의 성장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개인은 공동체에 기반을 둔 협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갈수록 그 익명성은 강화되고, 그로 인한 자유로움과 소외감이 공존한 채 소통이 배제된 비대화된 행정권력 안에서 스스로를 사회참여에서 배제시켜 왔다(이혜연, 2000). 개인은 이웃과 단절되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이기적으로 과편화되어 왔다. 그렇게 과편화된 개인들 앞에 언젠가부터 마을에서 가까운 자그마한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자라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웃과 한데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깨어 있게 해줄 '책'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책을 읽고 문화와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함께 고민

하고 풀어나가려 했고, 어린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알려주려 했다.

공공도서관이 공부방 중심의 경쟁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좌석 수에 연연하고 있을 때, 공공도서관이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자료 관리에 더 치중하고 있을 때, 공공도서관이 경제논리 중심의 사고와 정보화 위세에 떠밀려 ‘첨단’과 ‘효율성’을 논하고 있을 때,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이용자를 만나는 시간보다 행정서류로 씨름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이 공익요원으로 채워지고 있을 때, 공공도서관의 안내 데스크를 제복 입은 무뚝뚝한 청원경찰아저씨가 지키고 있을 때, 작은도서관은 마을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등지를 트고 있었다. 거기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고, 스스로의 의지로 참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놓으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6; 어린이와 도서관, 2006;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07).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정보와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며, 이를 통해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 사회기관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의 경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 정보화된 민주사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애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도록 활력을 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로 지역사회의 사랑방(drawing room of the

community)이라고도 불린다(Gill, 2002).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인류 문화역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을 말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것일까?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에서 시민들이 경험했던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했다. 한데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경험, 스스로 만들고 일구어가는 자치의 경험, 그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열망이다.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책 읽는 도시 만들기'의 주요한 가치는 책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작은도서관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 중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작은도서관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런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공공도서관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작은도서관을 선별하고, 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최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공공정책의 주요 의사결정권

자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런 관심을 도서관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주도하여야 한다. 지역 전체의 도서관 역할과 과제라는 틀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간에 비용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경험했던 의미 있는 활동이 지역 도서관 발전 방향 속에서 살아나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의 관점에서 이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이 고민에 작은도서관이나 지방의회,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시민들의 이런 관심과 요구를 비껴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문제를 공공도서관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여전히 공공도서관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예산으로 힘들어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체계 속에서 활동할 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더욱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을 끌어안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공공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몇몇 성공 경험으로부터 그동안 놓치고 있던 도서관의 철학과 가치를 우리 사회의 핵심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자각된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내는 일, 이제 그것을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그런 문제의식과 고민에서 출발했다. 작은도서관의 문제에 대

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온 파주 사례를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무엇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터놓고 얘기해보고, '도서관'이란 철학적 가치 앞에 서로를 낮추고 합일점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한다.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그 지향하는 방향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같은 ‘도서관’을 얘기하면서도 각자가 일하는 현장이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본 연구의 집필진 간에도 이런 이견이 존재했고, 이것과 관련한 상당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과연 다른 이념과 철학을 지닌 것일까?

이 장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작은도서관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념적 성격으로서의 정의 - ‘작은도서관’(Small Library):

민간의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김세훈, 2006; 정현태, 2006)을 지칭하는 이념적 명사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관 주도의 새마을작은도서관 같은 형태의 도서관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함하며, 규모는 작지만 일상생활 가까

이에서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은도서관’은 면적이나 인력, 자료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장(場)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발전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등 계층 양극화 완화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작은도서관’ 표기는 붙여서 하며, ‘운영’ 중심의 ‘사람 즉, 공동체’라는 요소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김준, 2006).

둘째, 규모로서의 정의 - ‘작은 도서관(Small Size Library):’

이때의 작은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 부족의 원인을 대규모 도서관 건립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곳곳에 설립하자는 작은 도서관 설립 방안 모색에서 근거한 개념이다(김영석, 2006). 이때의 표기는 ‘작은’ 과 ‘도서관’을 띄어서 표기하며, 개념상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일컫는 것이고, 규모만 작은 형태를 말한다.

셋째,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서 정의:

이때의 작은도서관은 앞선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공공정책의 지원 협력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김세훈, 2006). 2004년과 2006년 복권기금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서 제시된 지원대상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은도서관형 도서관’으로서 이념형적 ‘작은도서관’의 특징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이란 조건을 제시하여 규모로서 ‘작은 도서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이념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서 시설 기준을 제시하여 위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은 ‘도서관법’에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해당하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공중과 가까운 지역 내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규모로서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이때 규모는 ‘도서관법 제5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고’라는 용어로 통칭되었다.

표 1.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의
(법률 제9528호, 2009. 3. 25 일부 개정)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즉,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개념 차이는 ‘가깝다는 것’과 ‘작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규모로서의 작은 도서관 개념과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서 작은도서관 개념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첫

표 2.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시설 및 자료 기준

구분	도서관법 시행령 2009. 3. 26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2009. 3. 26 개정 이전	2009. 3. 26 개정
명칭	공공도서관	문고	작은도서관
시설	(인구 2만 미만일 때) ·면적 264㎡(약 80평)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면적 33㎡(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장서 3,000권 이상 ·연중기량 300권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직원	·330㎡(약 100평) 이하 사서직원 3명	·(별도의 조건 없음)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번째 이념적 성격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강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별도의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작은도서관 개념에서도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고 표현하여, ‘가깝다는 것’과 ‘작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성에 의해 조성되고,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작은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공공도서관은 이런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가?

도서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과거 도서관은 특정계층에 계만 서비스하는 기관이었다. 18세기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중을 위한 도서관들이 나타나면서 도서관은 자료를 공유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태동한 자유와 평등의 근대적 민주주의 정신은 모

든 지식과 정보는 전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직업, 인종, 종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개되고,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지식공유 사상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지식공유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 등장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의 '공공성'은 매우 의미 있는 가치로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식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평성의 의미,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공개성,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비성의 원칙, 즉 무료 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이용남, 2004). 서구 도서관사에서 공공도서관의 가치 있는 사상과 제도화 과정은 바로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획득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태동 과정은 앞서 작은도서관 이념에서 설명되었던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장으로서 지식정보 격차 해소, 계층 양극화 완화의 이념과 다르지 않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성립 과정은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이것은 이념적 성격으로서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강조하는 이념의 실현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공공도서관의 사상은 이후 도서관학자와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 철학으로 구현되고 있다.

표 3.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랑가나단, 2005)

1. 책은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Books are for use).
2.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Books are for all).
3. 모든 책은 그 독자에게로(Every book its reader).
4.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
5.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은 도서관이 가져야 할 근대적 의미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다. 첫째, 책은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며, 단지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 개념을 중요시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차별 없는 책과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라는 평등의 철학을 담고 있다. 셋째,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서 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도서관의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와 그 교육을 자신 속에서 살리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진보한다는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다케우치, 2010; 이용훈, 2004). 즉, 이것은 도서관 철학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이 해당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12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12가지 길(12 Ways Libraries are Good for the Country)'을 살펴보면 도서관 철학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도서관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차이에 따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가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용훈, 2004).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가치이며, 작은도서관의 가치이다.

표 4.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12가지 길 (www.ala.org)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12가지 길

(12 Ways Libraries are Good for the Country)

1.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배우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Libraries inform citizens).
2. 도서관은 벽을 허문다(Libraries break down boundaries).
3. 도서관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Libraries level the playing field).
4. 도서관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Libraries value the individual).
5. 도서관은 창조성을 길러준다(Libraries nourish creativity).
6. 도서관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Libraries open kids' minds).
7.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Libraries return high dividends).
8. 도서관은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Libraries build communities).
9. 도서관은 가족을 더 친밀하게 해준다(Libraries make families friendlier).
10. 도서관은 개인의 견해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서관을 통해 관용과 개방성을 유도한다(Libraries offend everyone).
11. 도서관은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한다(Libraries offer sanctuary).
12.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역사를 보존한다(Libraries preserve the past).

그러므로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향해야 함은 공공도서관이 지향해야 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또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현안이나 주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참여와 자치의 정신 역시 공공도서관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다만, 이런 공공도서관의 철학이 서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발달되어 왔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일제 이후 50년이 넘도록 빈곤과 저발달의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다.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이념과 사상의 진보성,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은 시설, 자료, 인력이라는 도서관의 기본 여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미발달의 개척기적 상황을 겪어왔다(이연옥, 2002). 그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주로 독서실과 공부방의 성격

으로 대변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 도서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서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서관 현장은 증가된 도서관에 걸맞은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정규 인력의 양산, 민간위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이후 증가된 시민의 문화교육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제기되어 도서관 서비스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 급박한 문제들로 도서관 내부에서 시름하고 있을 때, 도서관 밖의 시민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의 삶터에 기반을 두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작은도서관 운동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역사 속에서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의 기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던 환경에 기인하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미온적이었던 주체 문제에서 비롯된 역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다. 다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도 작은 규모의 근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부방 없이 운영해도 공공도서관처럼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 활동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 확장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를 불문하고 ‘도서관’이란 가치와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도서관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3 작은도서관의 유형

이 책에서는 현존하는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10가지로 구분하였다. 설립 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설립 이후 운영주체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1. 공립 작은도서관

- ① 직영: 자치단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후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사서를 배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기계약직, 공공근로, 공익, 기타 파트타임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형태로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법인 등 일정 자격을 가진 기관에 위탁: 자치단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조성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유형으로 부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이다.
- ③ 주민자율 운영체제: 자치단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조성한 후, 주민협의체(작은도서관 운영팀, 주민자치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유형으로 파주의 월릉, 광탄, 파평, 금곡 작은도서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3-2. 사립 작은도서관

- ① 개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공간이나 자비를 들여 마련한 공간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용인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현 느티나무도서관)이나, 파주의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고양의 책 놀이터도서관이 이 유형에 속한다.
- ② 공동주택(아파트):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아파트 시공업체가 조성하거나 자치단체 보조에 의해 공간이 조성된 후 주민협의체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 가장 많고, 파주의 팜스프링 봄썩도서관이나, 한라비발디도서관이 여기에 속한다.
- ③ 교회: 교회 등 종교 법인에서 설립 조성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대부분 예배당의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회 공간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의 사립 작은도서관 유형 중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의 꿀밤나무도서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 ④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거나, 개인이 자치단체에 설립 등록한 후 새마을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새마을회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이다. 이 경우 새마을회는 자치단체에서 새마을문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부를 지원한다.
- 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보육원, 고아원,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의 일부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 ⑥ 시민단체: 청소년기독회, YWCA, 여성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 ⑦ 기타: 기업체, 농협, 박물관의 일정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다.

표 1. 작은도서관 유형

설립 주체	운영주체		내용
공립	직영		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민간 위탁	법인 위탁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후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주민 자율 운영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후 지역주민들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사립	개인		개인이 자신 소유의 공간이나 자비를 들여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공동주택(아파트)		아파트 내 공동공간에 조성되어 주민협업체에 의해 운영하는 도서관
	교회		교회가 설립 조성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도서관
	복지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기타(기업, 군부대 등)		기타 기업, 농협, 박물관 등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4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경기도는 조성 후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2010년 4월 기준 141개였다. 그러나 국가도서관 통계지표상에 등록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788개였다(www.libsta.go.kr/2010. 10. 31). 무려 646개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작은도서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의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한 작은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010년 6월 18일에서 11월 20일까지였고, 조사 방법은 경기도 도서관정책팀에서 각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취합하였다. 그 결과 30개 시·군에서 응답하였고, 1개 시·군은 경기도의 자료를 받아 취합하였다.

4-1.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4.1.1. 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총 1,009개소로 공립 132개소(13.1%), 사립

877개소(86.9%)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김세훈, 2006)에서 조사했던 전국 단위 문고 현황(2005. 12. 31)에서 나타났던 공립 27%, 사립 72.9%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사립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의 수는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사에서는 작은도서관 수와 공공도서관 수 및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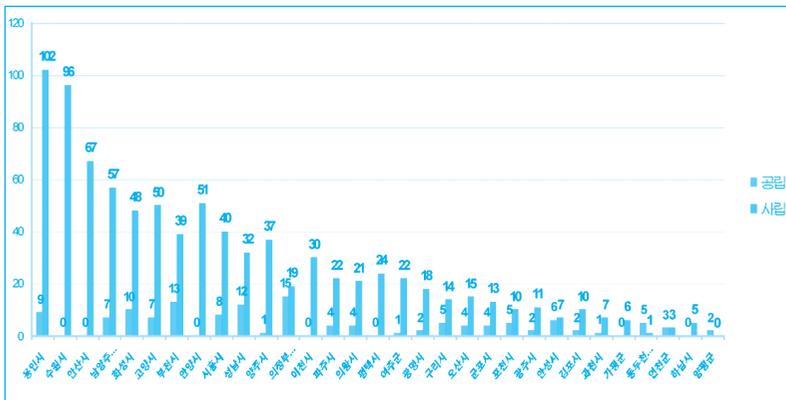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표 1.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자치단체명	작은도서관(개소)			공공도서관 (개소)	인구(명)
	공립	사립	합계		
가평군	0	6	6	3	58,085
고양시	7	50	57	12	939,815
과천시	1	7	8	2	71,869
광명시	2	18	20	3	335,878
광주시	2	11	13	4	245,810
구리시	5	14	19	3	194,152
군포시	4	13	17	5	281,121
김포시	2	10	12	3	233,676
남양주시	7	57	64	7	555,777
동두천시	5	1	6	2	93,746
부천시	13	39	52	10	868,106
성남시	12	32	44	7	971,038
수원시	0	96	96	15	1,070,371
시흥시	8	40	48	6	401,250
안산시	0	67	67	7	708,575
안성시	6	7	13	3	175,006
안양시	0	51	51	6	616,771
양주시	1	37	38	3	193,653
양평군	2	0	2	4	94,198
여주군	1	22	23	2	108,489
연천군	3	3	6	2	44,682
오산시	4	15	19	4	178,642
용인시	9	102	111	10	862,865
의왕시	4	21	25	2	146,295
의정부시	15	19	34	4	426,602
이천시	0	30	30	3	200,806
파주시	4	22	26	7	343,525
평택시	0	24	24	5	412,685
포천시	5	10	15	4	157,312
하남시	0	5	5	2	148,458
화성시	10	48	58	8	500,171
합계	132	877	1,009	158	11,639,429
백분율(%)	13.1	86.9	100		

(2010. 9. 30 기준)

4.1.2. 유형별 작은도서관 현황

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을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표 2>와 같다. 독립 직영 유형이 많은 자치단체는 의정부시(14개소)이며, 독립 위탁 유형이 많은 자치단체는 부천시(13개소)이다. 또 사립 작은도서관 중 공동주택 유형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용인시(44개소)이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47개소)와 안양시(26개소)이다.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 자치단체는 수원시(47개소)와 안양시(26개소)이다.

이것은 선행연구(김세훈, 2006)에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종교시설 유형이 2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동주택 유형이 이전 조사보다 많아졌고, (8.8%→17.2%) 개인이 운영하는 유형도 이전 조사의 10.5%보다 높아진 16.6%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마을문고 운영 유형은 이전 조사의 19.9%보다 감소한 10.5%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작은도서관 수와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만으로 10개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담당자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작은도서관이 99개소 9.8%에 이르렀다.

표 2. 경기도 자치단체 유형별 작은도서관 현황

(단위: 개소)

자치 단체	공립			사립								계
	직영	위탁	주민	개인	공동 주택	종교	단체	새마을	복지	기타	미분류	
가평군	0	0	0	6	0	0	0	0	0	0	0	6
고양시	0	7	0	14	13	18	0	0	5	0	0	57
과천시	1	0	0	1	0	0	0	6	0	0	0	8
광명시	1	1	0	4	1	2	2	8	1	0	0	20
광주시	2	0	0	11	0	0	0	0	0	0	0	13
구리시	5	0	0	11	2	0	1	0	0	0	0	19
군포시	3	1	0	0	4	7	0	1	0	1	0	17
김포시	2	0	0	8	1	0	0	0	0	1	0	12
남양주시	3	4	0	5	22	24	1	0	3	2	0	64
동두천시	2	3	0	0	0	1	0	0	0	0	0	6
부천시	0	13	0	6	1	19	0	6	4	3	0	52
상남시	7	5	0	4	12	13	3	0	0	0	0	44
수원시	0	0	0	0	0	6	1	47	1	0	41	96
시흥시	1	7	0	0	0	2	0	0	0	0	38	48
안산시	0	0	0	3	5	47	2	1	8	1	0	67
안성시	0	6	0	4	0	0	0	3	0	0	0	13
안양시	0	0	0	4	1	26	0	20	0	0	0	51
양주시	1	0	0	27	7	1	0	0	0	2	0	38
양평군	2	0	0	0	0	0	0	0	0	0	0	2
여주시	1	0	0	2	1	17	1	0	0	1	0	23
연천군	1	2	0	2	0	1	0	0	0	0	0	6
오산시	4	0	0	0	0	0	0	0	0	0	15	19
용인시	9	0	0	28	44	20	2	4	3	1	0	111
의왕시	4	0	0	1	8	3	0	9	0	0	0	25
의정부시	14	1	0	8	2	4	3	0	1	1	0	34
이천시	0	0	0	3	10	14	2	1	0	0	0	30
파주시	1	0	3	5	7	8	0	0	1	1	0	26

평택시	0	0	0	0	2	20	2	0	0	0	0	24
포천시	0	1	4	0	1	6	3	0	0	0	0	15
하남시	0	0	0	0	0	0	0	0	0	0	5	5
화성시	2	0	8	10	30	8	0	0	0	0	0	58
합계	66	51	15	167	174	267	23	106	27	14	99	1009
백분율(%)	6.5	5.1	1.5	16.6	17.2	26.5	2.3	10.5	2.7	1.4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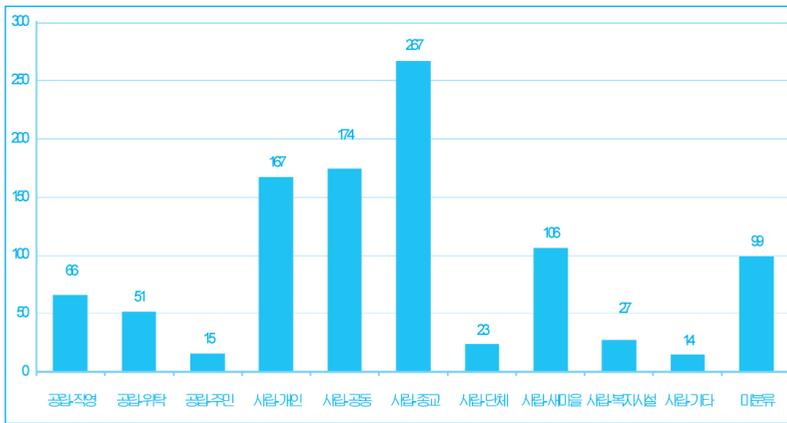


그림 2. 경기도 유형별 작은도서관 현황

4.1.3. 설립연도 현황

설립연도에 따른 작은도서관 분포는 <표 3>과 같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003년 이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MBC 문화방송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공립 작은도서관 설립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유형의 작은도서관 설립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시설 유형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새마을문고 유형은 1990년대 말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

들어 증가량이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증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급속히 증가했던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절대량이 아직 까지도 수요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공공도서관 증가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경기도 작은도서관 설립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설립연도	공립	사립	계
1990 이전		14	14
1991		5	5
1992	1	5	6
1993	0	8	8
1994	0	12	12
1995	2	26	28
1996	0	11	11
1997	0	6	6
1998	0	19	19
1999	1	14	15
2000	9	13	22
2001	4	12	16
2002	7	21	28
2003	6	53	59
2004	5	67	72
2005	6	87	93
2006	10	102	112
2007	9	91	100
2008	22	92	114
2009	31	127	158
2010	19	75	94
무응답	0	17	17
합계	132	877	1,009
백분율(%)	13.1	86.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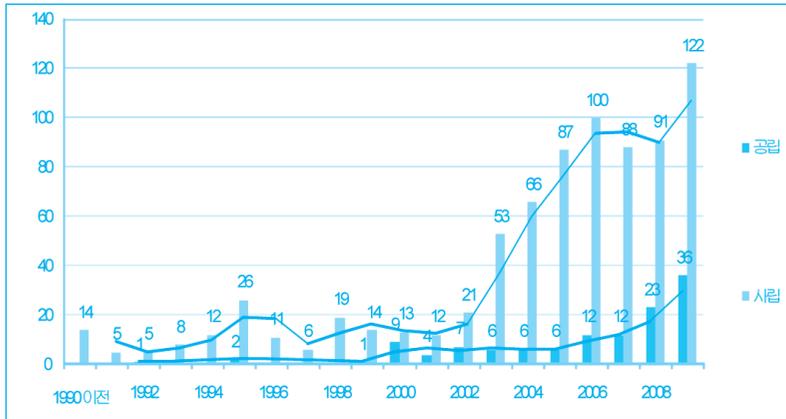


그림 3. 경기도 작은도서관 설립연도별 현황

4.1.4. 시설면적 현황

면적에 따른 작은도서관 유형을 보면 $66m^2$ (20평) 이하의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김세훈, 2006)에서 전국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 24평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의 80.4%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면적 $33m^2$ (10평)에서 $165m^2$ (50평)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공립의 경우 $100m^2$ 이상 규모의 작은도서관이 83개소로 62.9%를 차지하고, $99m^2$ 이하의 작은도서관은 49개소로 37.1%를 차지하는 반면에, 사립은 $100m^2$ 이상의 작은도서관은 217개로 24.7%를 차지하고, $99m^2$ 이하의 작은도서관은 599개로 68.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경기도 작은도서관 시설면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면적(m ²)							계
	33 미만	33-66	67-99	100-165	166-264	264 이상	무응답	
공립 지역	4	14	12	13	19	4		66
공립 위탁	0	1	12	17	15	6		51
공립 주민	0	1	5	5	3	1		15
소계	4	16	29	35	37	11		132
사립 개인	3	86	33	29	6	0		157
사립 공동	3	70	38	40	8	5		164
사립 종교	8	133	57	39	10	5		252
사립 단체	2	6	3	7	0	3		21
사립 새마을	8	47	25	19	4	2		105
사립 복지	0	17	5	5	0	0		27
사립 기타	1	5	1	6	0	1		14
사립미분류	1	27	20	14	8	6	61	137
소계	26	391	182	159	36	22	61	877
합계	30	407	211	194	73	33	61	1,009
백분율(%)	3.0	40.3	20.9	19.2	7.2	3.3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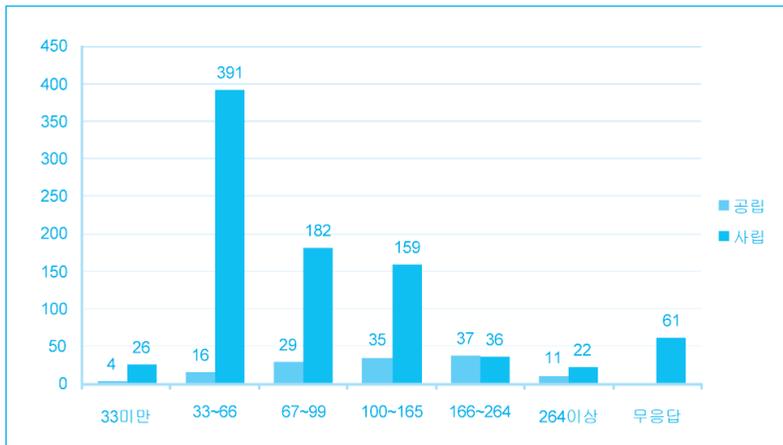


그림 4. 경기도 작은도서관 시설면적 현황

4.1.5. 장서 현황

작은도서관 장서량은 전체의 83.9%가 10,000권 미만이고, 1,000권에서 3,000권 미만이 4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 연구(김세훈, 2006)에서 조사된 평균 장서량 3,287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10,000권 이상이 48개소(36.4%)이며, 10,000권 이하 작은도서관은 83개소(62.9%)였다. 반면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10,000권 이상이 42개소(4.8%)이며 10,000권 이하는 763개소(87%)에 달했다. 면적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서량에서도 공립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 중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새마을문고 유형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운영기간이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경기도 작은도서관 장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장서수	1000-3000권	3001-6000권	6001-10000권	10001-15000권	15000권 이상	무응답	계
공립 직영	8	17	22	13	5		65
공립 위탁	0	13	9	20	9		51
공립 주민	2	7	5	1	0		15
공립 소계	10	37	36	34	14	1	132
사립 개인	94	31	17	2	3		147
사립 공동	97	48	16	2	1		164
사립 종교	175	57	15	2	2		251
사립 단체	14	4	1	0	2		21
사립 새마을	16	21	41	25	2		105
사립 복지	18	7	1	1	0		27
사립 기타	10	3	1	0	0		14
사립 미분류	53	21	2	0	0	72	148
소계	477	192	94	32	10	72	877
합계	487	229	130	66	24	73	1,009
백분율(%)	48.3	22.7	12.9	6.5	2.4	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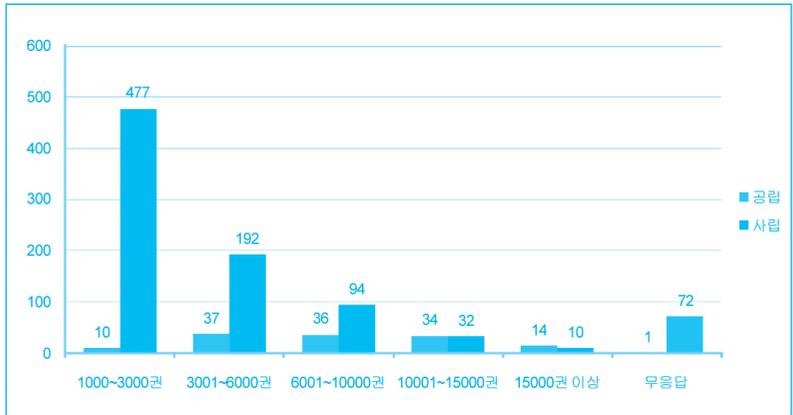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 작은도서관 장서현황

4.1.6. 인력 현황

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18.7%에 해당하는 189개소에서 응답이 없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시설이나 장서량에 비해 인력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작은도서관 인력은 무급상근(34.7%)과 자원봉사(2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유급사서가 있는 곳이 41개소(31%), 유급상근이 있는 곳은 79개소(59.8%)로 일정 정도의 급여를 주고 채용하는 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무급상근, 자원 활동가가 있는 곳은 10개소(7.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유급사서가 7개소(0.8%), 유급상근이 110개소(12.5%), 무급상근과 자원활동이 565개소(64.4%)로 무급상근과 자원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경기도 작은도서관 인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유급사서	유급상근	무급상근	자원 활동	기타	무응답	계
공립 직영	13	41	1	8	1		64
공립 위탁	28	23	0	0	0		51
공립 주민	0	15	0	0	0		15
공립 소계	41	79	1	8	1	2	132
사립 개인	2	19	78	25	0		124
사립 공동	0	15	55	71	2		143
사립 종교	4	28	120	34	3		189
사립 단체	1	6	10	0	1		18
사립 새마을	0	4	19	78	0		101
사립 복지	0	15	8	4	0		27
사립 기타	0	3	8	1	0		12
사립미분류	0	20	51	3	2	187	263
소계	7	110	349	216	8	187	877
합계	48	189	350	224	9	189	1,009
백분율(%)	4.8	18.7	34.7	22.2	0.9	1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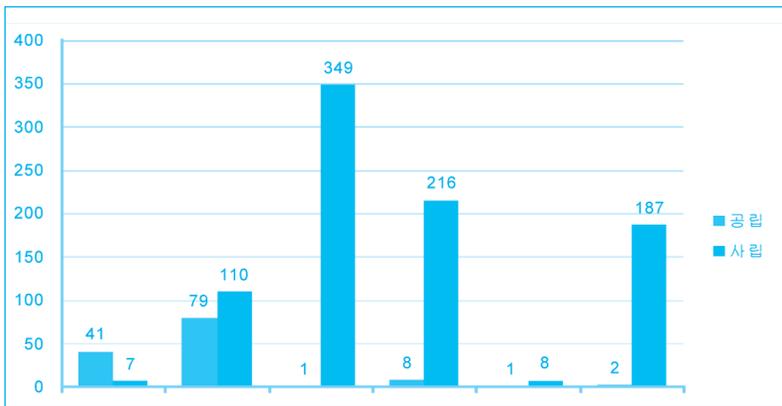


그림 6. 경기도 작은도서관 인력 현황

4.1.7. 개관일수 현황

작은도서관 개관일수를 보면 평일만 개관하는 곳이 412개소(40.8%)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매일 개관하는 곳은 122개소(12.1%),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이상 6일 이하 개관하는 곳은 232개소(23%), 5일 미만 개관하는 곳은 103개소(10.2%)이다. 주말 개관이 가장 많은 유형은 사립의 개인 및 종교시설 유형이었다. 이것은 시설면적 및 장서에서 대부분 열악했던 작은도서관이 주말까지 운영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열악한 운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경기도 작은도서관 개관일수 현황

구분	5일 미만	평일만	평일5일 주말1일	평일4일 주말1일	평일4일 주말2일	매일	무응답	계
공립 직영	0	42	6	3	8	6		65
공립 위탁	0	12	26	3	7	3		51
공립 주민	0	3	7	2	3	0	1	16
공립 소계	0	57	39	8	18	9	1	132
사립 개인	11	59	28	5	5	25		133
사립 공동	32	79	18	3	0	12	1	145
사립 종교	33	57	37	9	31	58	3	228
사립 단체	0	9	5	1	1	3		19
사립-새마을	22	69	5	0	1	6		103
사립 복지	2	11	8	0	1	3		25
사립 기타	0	7	4	1	0	1		13
사립미분류	3	64	1	0	3	5	135	211
소계	103	355	106	19	42	113	139	877
합계	103	412	145	27	60	122	140	1,009
백분율(%)	10.2	40.8	14.4	2.7	5.9	12.1	1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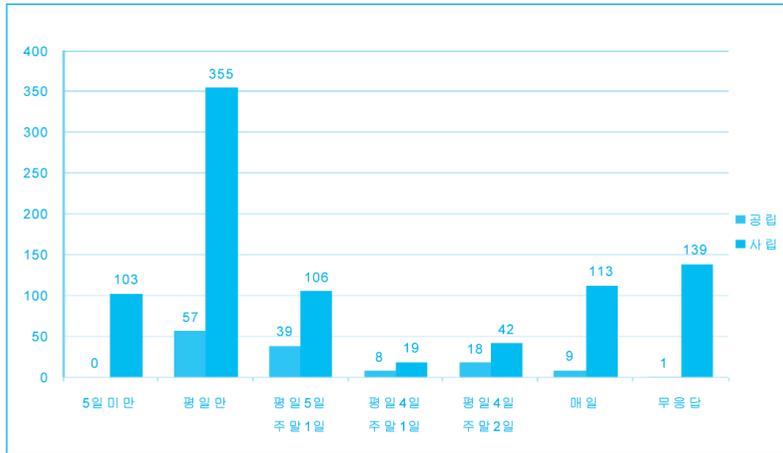


그림 7. 경기도 작은도서관 개관일수 현황

4.1.8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이상에서와 같이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시설, 자료, 인력 측면에서 모두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면적 20평 미만, 장서량 3,000권 미만이며, 인력은 무급상근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조사 현황과 매우 유사하여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연도별 작은도서관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은 2003년 이후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가는 공공도서관이 증가하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져 공공도서관이 증가해도 작은도서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도서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와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은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다양한 유형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수립 및 집행 현황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수립 현황 및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였고, 조사 방법은 경기도 도서관정책팀에서 각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취합되었다. 그 결과 1개 시·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4.2.1.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회수한 30개 시·군 중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자치단체는 27개, 그 외 시청의 문화체육과 및 평생학습과와 같은 유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3개소였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곳은 24개소, 미수립한 곳은 6개소로 80%가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자치단체마다 작은도서관 정책수립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 수립의 근거로는 사업부서의 발의 16개소(53%),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 8개소(26.7%), 조례 3개소(10%), 작은도서관의 요구 또는 민원 2개소(6.6%), 기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지원하는 곳 1개소(3.3%)로 아직까지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기보다는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작은도서관 지원 등 정책 수립 근거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조례	3	10.0
2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	8	26.7
3	사업부서의 발의	16	53
4	작은도서관의 요구 또는 민원	2	6.6
5	기타	1	3.3
합계		30	100

작은도서관 계획 수립의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18개소(36%), 조성계획 15개소(30%), 지원기준 10개소(20%), 중장기 계획 7개소(14%)로 나타났으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5개소(16.7%), 필요성이 적기 때문 1개소(3.3%)로 나타났다.

표 9. 작은도서관 정책이나 계획에 포함된 내용(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중장기 발전계획	7	14.0
2	작은도서관 조성계획	15	30.0
3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18	36.0
4	작은도서관 지원기준 내용	10	20.0
5	법제정비에 관한 내용	0	0.0
6	기타	0	0.0
합계		50	100

4.2.2. 작은도서관 지원

① 지원 방법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20개소, 지원하지 않는 곳은 9개소, 무응답은 1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원대상 선정방법으로는 평가 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곳은 6개소, 지원 요청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곳은 5개소, 새마을문고 또는 설립신고 순이나 신규 조성 우선지원 방법으로 지원하는 곳이 3개소로 나타났다. 평가 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는 가평, 파주, 화성, 양주, 성남, 용인, 남양주, 고양, 안산, 안양이었으며, 지원 유형으로는 균등지원 10개소, 차등지원 4개소, 기타 5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평가와 같은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균등지원 및 차등지원과 같은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 선정방법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평가 후 지원	10	40.0
2	담당자의 임의선정 후 지원	1	4.0
3	지원요청한 도서관 지원	5	20.0
4	경기도에서 선정한 도서관 지원	6	24.0
5	일정 운영기간 경과 후 무조건 지원	0	0.0
6	기타	3	12.0
합계		25	100

② 지원 내역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구입비 및 자료지원이 19개소(43%), 정보화 지원 9개소(20%), 운영비 지원 7개소(15.9%), 시설투자비(보수, 증축, 리모델링) 4개소(9%), 인력활용 지원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각각 2개소(4.5%)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작은도서관 간판이나 사인물을 지원하는 곳이 1개소 있었다. 자료구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운영비 지원은 15.9%에 불과했고, 인건비 지원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별도의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는 파주시,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였다.

표 11. 작은도서관 지원내역(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자료구입비 및 자료 지원	19	43.2
2	운영비 지원	7	15.9
3	인력활용 지원(사서/공익근무요원 파견)	2	4.5
4	인건비 지원	0	0.0
5	정보화(도서관전산화, 도서관리 프로그램)	9	20.5
6	문화교육 프로그램	2	4.5
7	시설투자비(보수, 증축, 리모델링)	4	9.1
8	기타	1	2.3
합계		44	100

③ 작은도서관 지원 시 문제점 또는 어려움

작은도서관 담당자로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원 후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0개소(28.6%), 실질적 부분의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한 곳이 7개

소(20%),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액 적음과 지원 대상 선정의 어려움, 다양한 요구를 일관된 행정지원체계 수용 어려움에 각각 5개소(14.3%)가 있었다. 기타 의견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지원 검토가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12. 작은도서관 지원 시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액 적음	5	14.3
2	지원 대상 선정 어려움	5	14.3
3	지원 후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음	10	28.6
4	실질적 부분의 지원이 어려움	7	20.0
5	작은도서관이 새로운 경쟁관계 및 압력단체	2	5.7
6	다양한 요구를 일관된 행정지원체계 수용 어려움	5	14.3
7	기타	1	2.9
합계		35	100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 7개소(38.9%), 지원방침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4개소(22.2%), 지원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4개소(22.2%), 공공도서관 활동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다 3개소(16.7%)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계획이 없으나 향후 지원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50%만이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며, 지원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예산부족 및 인력부족 등을 들었다. 즉,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와 선정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보 및 인력 부족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지원방침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4	22.2
2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	7	38.9
3	보조금 집행이 복잡하고 감사대상임	0	0.0
4	공공도서관 활동에 집중하느라 여력 없음	3	16.7
5	새로운 경쟁관계 및 압력단체	0	0.0
6	지원효과 미약	4	22.2
7	기타	0	0.0
합계		18	100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공공성과 지속성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21개소(53.8%), 자료구입비 정도 12개소(30.8%), 필요 없음 3개소(7.7%), 운영비 2개소(5.1%), 원하는 것 모두 지원 1개소(2.6%)로 나타나서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공공성과 지속성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작은도서관 지원의 적정선(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일정 정도의 자료구입비까지	12	30.8
2	운영비도 지원해야 한다	2	5.1
3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	0	0.0
4	사립 작은도서관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2.6
5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수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1	53.8
6	지원할 필요가 없다	3	7.7
합계		31	100

4.2.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및 협력 유형

지역 도서관 협력체계 속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11개소(35.5%),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및 실현 7개소(22.6%),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5개소(16.1%), 공공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 5개소(16.1%), 기타 및 무응답으로 각각 3.2%, 6.5%로 나타났다.

표 15. 지역도서관 협력체계 속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복수응답)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대출 소분관 정도)	11	35.5
2	시민운동의 기반 조성	0	0.0
3	지역사회 봉사 기회 확대 및 실현	7	22.6
4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5	16.1
5	공공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	5	16.1
6	기타	1	3.2
7	무응답	2	6.5
합계		31	100

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에서 바라는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수준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으로서 필요 시 협력이 10개소(31.3%), 문화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도서관 공동홍보가 9개소(28.1%),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협력이 7개소(21.9%),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상호대차가 4개소(12.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호는 현재의 수준에서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가

장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수준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협력 (대출 소분관)	7	21.9
2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상호대차 (분관)	4	12.5
3	문화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도서관 공동홍보 (수평적 협력과 정보 교류)	9	28.1
4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으로서 필요 시 협력	10	31.3
5	무응답	2	6.2
합계		32	100

② 작은도서관 협의체

작은도서관 협의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응답한 곳이 10개소(33.3%), 없다고 응답한 곳이 20개소(66.7%)였다.

표 17. 작은도서관 협의체 유무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있음	10	33.3
2	없음	20	66.7
합계		30	100

작은도서관 협의체 유형으로는 사립중심의 민간협의체가 있는 자치단체가 5개소(50%), 공립 주도의 자치단체 중심 협의체가 있는 곳과 민관 협의체가 있는 곳이 각각 2개소(20%)와 기타 새마을문고 민간위탁단체 협의체 1개소가 있었다.

작은도서관 협의체의 주요활동으로는 정보교류 5개소(26.3%), 자치단

체와 협의 창구 3개소(15.8%), 자료지원 및 순환과 행사, 홍보 등 공동사업 수행이 각각 2개소(10.5%),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봉사자 교육이 1개소(5.3%)로 나타났다.

표 18. 작은도서관 협의체 주요활동 내용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정보교류	5	26.3
2	자료지원 및 순환	2	10.5
3	공동사업 수행(행사, 홍보)	2	10.5
4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봉사자 교육	1	5.3
5	자치단체와 협의 창구	3	15.8
6	기타	0	0.0
합계		19	100

기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활동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11개 자치단체에서 답변해주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상호 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행사 홍보 지원이 대부분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술적 업무지원
-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 교육 및 워크숍(가평, 안양, 화성, 양주, 용인, 파주)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통합자료 목록 구축, 통합회원제(의정부)
-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위원회의 활동 지원(평택)
-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및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로 협력 추진 검토(남양주)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으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9. 작은도서관 전반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

공공도서관 및 자치단체 측면		
구분	내용	빈도
조직	• 작은도서관 담당인력이나 자원조직 체계 확립	4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 필요	8
	• 국가 및 도 단위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필요	1
기타	• 생활권역별로 1,000㎡ 규모의 생활밀착형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이 효과적이라 봄	1
	•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등록제한을 두기 어려움	1
	• 작은도서관 관련 매뉴얼 또는 세부규정 부재로 업무추진 어려움	1
	• 민간의 개인적인 요구들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의욕 감퇴	1

작은도서관 측면		
구분	내용	빈도
운영	•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예산부족, 공간 협소 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음	3
인력	• 전문인력 배치 또는 사서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3

4.2.4.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수립 및 집행 현황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한계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보조금 지원 형태의 행정체계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의 실질적 지원이 어렵고, 작은도서관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관된 행정지원체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로 인해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지원근거나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공공도서관 내적문제인 예산확보 및 담당 인력 미확보와 작은도서관의 다양성 및 운영의 지속성 미확보라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은 마지막의 개방형 질문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이런 현실적 문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 수준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즉 지역 도서관 협력체계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이 가장 많았으나(36%), 협력의 수준은 필요시 유관기관으로서 협력(31%)이나 문화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공동홍보(28%)는 현실적으로 용이한 수준의 협력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이 분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역할 인식은 있으나, 극복해야 할 내적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현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속성 정도에 따른 명확한 지원 근거와 방침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3. 경기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각 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6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배부·회수하였고, 조사 방법은 각 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을 통해서 배부·회수하거나 작은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배부·회수하였다. 총 877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107개소가 응답하여 12.2%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4.3.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① 작은도서관 운영 동기

개인이나 개인에 준하는 민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50명(42.7%),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32명(27.4%), 다른 활동(선교, 독서지도, 사회운동 등)의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23명(19.7%), 기타 의견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등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12명(10.3%)이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이진우, 2006; 이용재 외, 2007)에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이유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수 및 기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조사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불만족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설문지 배부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동기는 ‘도서관’ 자체에 대한 요구나 고민

(27.4%)으로부터 시작되었기보다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참여의 요구(53%)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동기(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32	27.4
2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0	0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50	42.7
4	다른 활동(선교활동, 독서지도, 사회운동 등)의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23	19.7
5	기타	12	10.3
합계		117	100

② 지역사회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주민사랑방으로서의 주민친화와 소통의 역할이 54명(30.5%),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및 실현의 역할이 37명(20.9%)이며, 공

표 21.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14	7.9
2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	32	18.1
3	시민운동의 기반조성	6	3.4
4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	28	15.8
5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및 실현	37	20.9
6	주민 사랑방으로서 주민친화와 소통	54	30.5
7	기타	6	3.4
합계		177	100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이 32명(18.1%),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응답이 28명(15.8%)으로 나타났다. 즉, 작은도서관의 역할로 주민사랑방으로서 역할,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 순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에서 인식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다르지 않았다.

③ 작은도서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자료대출이 87명(24.9%), 자료열람이 72명(20.6%),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능이 67명(19.2%), 공부방 및 학습지도와 참고봉사, 커뮤니티 기능에는 각각 35명(10%)이 응답하였다. 이것 역시 공공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유사했다.

표 22. 작은도서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공부방 및 학습지도	35	10.0
2	자료대출	87	24.9
3	자료열람	72	20.6
4	참고봉사	35	10.0
5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능	67	19.2
6	커뮤니티 기능	35	10.0
7	협력네트워크 구축	16	4.6
8	기타	2	0.6
합계		349	100

④ 작은도서관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

작은도서관에서 사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가 10명(8.8%), 시민을 교육하여 시민사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가 29명(25.4%), 현재까지는 전문사서가 필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리라 본다가 23명(20.2%),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 활동가로 운영한다가 41명(35.9%)으로 전문사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4.9%에 해당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33.9%에 달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문사서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도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하기 나름이며, 자격의 유무보다는 도서관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에 반드시 사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작은도서관 전문인력의 필요성(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전문사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10	8.8
2	시민들을 교육하여 시민사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9	25.4
3	시민 자원 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10	8.8
4	현재까지는 전문사서가 필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23	20.2
5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 활동가로 운영한다	41	35.9
6	기타	1	0.9
합계		114	100

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는 63명(52.5%)이 재원 확보, 34명(28.3%)이 인력 확보, 10명(8.3%)이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수집, 정기간행물의 수급문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장소 협소의 어려움을 꼽았다.

표 24.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재원 확보	63	52.5
2	인력 확보	34	28.3
3	프로그램 운영	10	8.3
4	도서관 서비스 개발	9	7.5
5	기타	4	3.3
합계		120	100

또,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자비 59명(30.4%), 후원금 46명(23.7%), 수익사업 27명(13.9%), 공모사업 신청지원 15명(7.7%), 회비 16명(8.2%), 기타 4명(2.1%)으로 답변하였다.

표 25.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국·도·시·비 보조금	24	12.4
2	후원금	46	23.7
3	회비	16	8.2
4	공모사업 신청 지원	15	7.7
5	수익사업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베품시장, 바자회)	27	13.9
6	자비	59	30.4
7	기타	4	2.1
8	무응답	3	1.5
합계		194	100

4.3.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① 작은도서관 지원 받은 내역

사립 작은도서관이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 지원금에 43명(50.6%), 기타 23명(27.1%),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7명(8.2%), 시설보수 지원 6명(7.1%)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원 내용에는 도서 지원 19명, 순회도서서비스 3명이 있었다. 이처럼 지원받은 내역은 주로 도서나 자료구입비가 대부분이었다.

표 26. 작은도서관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황(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지원금(자료구입비, 운영비 등)	43	50.6
2	인력활용 지원	2	2.4
3	정보화 지원	3	3.5
4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7	8.2
5	시설보수 지원	6	7.1
6	기타	23	27.1
7	무응답	1	1.2
합계		85	100

② 지원금 집행의 어려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지원금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하여는 지원내역과 집행 희망내역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21명(30.4%), 기타 15명(21.7%), 지원금 처리에 있어 서류절차의 어려움 7명(10.1%), 지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및 관련업무 참가 6명(8.7%)이 응답했다. 기타 답변으로 어려움이 없다 12명, 일회성 지원에 따른 어려움 등이 있었다.

표 27. 작은도서관 지원금 집행의 어려움(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지원금과 집행희망의 차이	21	30.4
2	지원금 처리에 있어서 서류절차의 어려움	7	10.1
3	지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및 관련 업무 참가	6	8.7
4	기타	15	21.7
5	무응답	20	29.0
합계		69	100

③ 작은도서관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자료 구입비 및 자료지원 61명(39.1%), 인건비 지원 26명(16.7%), 운영비 지원 24명(15.4%), 인력활용 지원 18명(11.5%), 정보화 지원 11명(7.1)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보수비 지원에 각각 7명(4.5%)과 기타 자원 활동가 교육 2명이 있었다. 이처럼 지원받은 것은 주로 도서관 자료구입비인 것에

표 28. 작은도서관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자료구입비 및 자료지원	61	39.1
2	운영비 지원	24	15.4
3	인력활용 지원(사서, 공익근무요원 파견 등)	18	11.5
4	인건비 지원	26	16.7
5	정보화(도서관전산화, 도서관리 프로그램)지원	11	7.1
6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7	4.5
7	시설보수비(증·개축비 지원)	7	4.5
8	기타	2	1.3
합계		156	100

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인력활용 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④ 보조금 지원받을 의사 유무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03명(96.3%)이 지원받기를 희망하였다.

표 29. 작은도서관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의사

번호	구분	빈도수	백분율(%)
1	있음	103	96.3
2	없음	4	3.7
합계		107	100

지원받기를 희망한다면, 작은도서관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도서관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51명(39.2%),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31명(23.8%),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27명(20.8%),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16명(12.3%)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체 운영자금의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공공도서관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이유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작은도서관 운영 요구를 깊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30. 작은도서관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근거(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31	23.8
2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27	20.8
3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16	12.3
4	공공도서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51	39.2
5	기타	4	3.1
6	무응답	1	0.8
합계		130	100

⑤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바라는 점

작은도서관 지원 시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지원(인력지원, 교육지원 등) 53명(43.8%), 보조금 집행범위 확대 33명(27.3%), 보조금 인상 18명(14.9%) 물적 지원 이외의 자치단체의 관심 10명(8.3%)이 응답하였으며, 기타 응답으로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도서관 환경조성 등이 있다.

표 31.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바라는 점(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수(명)	백분율(%)
1	보조금 인상	18	14.9
2	보조금 집행 범위의 확대	33	27.3
3	실질적인 운영지원(인력지원, 교육지원 등)	53	43.8
4	물적 지원 이외의 자치단체의 관심	10	8.3
5	기타	6	5.0
6	무응답	1	0.8
합계		121	100

4.3.3.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 방안

① 지역 도서관 협력체계 속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 확대 52명(38.2%),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및 실현 42명(30.9%), 공공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도서관의 후원세력화) 21명(15.4%)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반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 담당자와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기보다는 도서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의 기회로서 작은도서관 역할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안(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대출 소분관 정도)	10	7.4
2	시민운동의 기반 조성	8	5.9
3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 및 실현	42	30.9
4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52	38.2
5	도공공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 (도서관의 후원 세력화)	21	15.4
6	기타	3	2.2
합계		136	100

②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수준

사립 작은도서관과 자치단체 또는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수준에 대해

서는 문화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도서관 공동홍보 44명(37%),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으로서 필요 시 협력 29명(24.4%),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상호대차를 위한 협력(분관) 23명(19.3%),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협력(대출 소분관 정도) 18명(15.1%)이 응답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협력 수준과 매우 유사하였다.

표 33. 지치단체 또는 도서관과의 협력 수준(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협력 (대출 소분관 정도)	18	15.1
2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상호대차를 위한 협력(분관)	23	19.3
3	문화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공동 홍보 (수평적 협력과 정보교류)	44	37.0
4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으로서 필요 시 협력	29	24.4
5	기타	4	3.4
6	무응답	1	0.8
합계		119	100

③ 운영의 공공성

작은도서관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75명(52.1%), 무료로 운영한다 38명(26.4%),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경비(회원가입비, 도서보증금, 문화강좌료 등)를 받고 그 이외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29명(20.1%)이 응답하였다. 응답해준 거의 모든 도서관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무료 운영과 개방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공공성을 위한 노력(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75	52.1
2	무료로 운영한다	38	26.4
3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필요 경비(회원가입비, 도서보증금, 문화강좌료 등)는 받고,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한다	29	20.1
4	기타	2	1.4
합계		144	100

④ 운영의 지속성

작은도서관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속 운영할 것이다 100명(91.7%), 당초 설립목적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운영할 것이다 5명(4.6%),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만둘 것이다 2명(1.8%)이 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향후 지속적인 운영 의사(복수응답)

번호	답변	응답자 수(명)	백분율(%)
1	계속 운영할 것이다	100	91.7
2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만둘 것이다	2	1.8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만둘 것이다	0	0.0
4	당초 설립 목적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운영할 것이다	5	4.6
5	기타	2	1.8
합계		109	100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빈도
자치단체 지원 요청	운영비 등 재정 지원	12
	문화프로그램 지원	12
	도서구입비, 도서 지원	15
	인력, 인건비 지원	3
	사서 교육	3
	도서대출 프로그램 지원	4
	자원봉사자 교육	4
	자원봉사자 연결 등 지원	2
	운영자 교육	1
	자원봉사자 시간 인정	2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5
경로당 등 유희공간 지원	1	
어려움 호소	운영 공간 협소	1
	인력 확보 어려움	2
	전산프로그램 부재	1
	재원확보의 어려움	2
기타	전문인력 배치 필요	1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운영 희망	1
	작은도서관 특성화(어린이, 노인, 영어도서관 등)	1
	개관 이전 운영자 사전교육 필요	1
	작은도서관 홍보 필요	2
	공공,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공간, 재원,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3.4.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분석

경기도 사립 작은도서관 877개 중에서 본 설문에 응답한 작은도서관 107개소는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관을 맺거나 협력하고 있는 수준일 수 있다. 즉, 전체 877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12.2% 정도만이 지역사회와 일정정도의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7개소의 작은도서관 설문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도서관’ 자체의 발전과 고민 속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시작(27.4%)했다기보다는 도서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의 요구로부터 도서관운영을 시작(53%)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인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기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38.2%), 지역사회 봉사기회 확대(30.9%)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속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공공도서관의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운영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91.7%). 그러나 이런 참여 요구로 시작된 작은도서관 운영은 주민사랑방으로서 주민친화와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자료대출 및 열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해주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공공도서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즉, 공공도서관과는 일정 정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공도서관과 협력 수준은 공공도서관에서 인식하는 수준과

유사했다.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은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도서관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환원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공공성 지속성 확보 정도에 따라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4. 총괄 시사점

이상에서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3가지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먼저 지역별로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황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처음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수는 총 877개였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공립, 사립에 따른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달라서 총괄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취합된 자료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1,009개소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현황조차도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자료, 장서, 운영시간, 인력 등의 현황이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자치단체 및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은도서관 전수 조사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에 일정 정도 인식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은 각각의 장에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공공도서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사상과 이념 그 자체가 작은도서관이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래의 공공도

서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필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협력의 관점에서 당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할 때이다. 그 방법은 도서관의 가치와 원칙 속에서 찾되 소통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공공성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른 지원 방법을 구체해야 할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5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집행 사례

앞서 조사된 경기도 작은도서관 현황은 파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파주시가 어떻게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파주시의 사례를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과정을 통해 어떻게 파주시가 작은도서관 현안에 대응해 왔는지를 기술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5-1. 파주시 현황

파주시는 1994년 도서관이 처음 들어설 때만 해도,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 16만 정도의 군(郡) 단위 소도시였다. 1996년 도·농 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녹지 공간의 확대와 같은 전략적 과제들을 실천해 오면서 인구 증가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이것은 민선 3기와 4기를 지나면서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 기술이 채택된 U-city 건설, LG Display 단지 조성과 더불어 출판

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와 문화 교육 인프라까지 구축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진전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심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져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고급문화는 기존의 향토문화와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1990년대에 건립된 3개의 공공도서관은 모두 공부방 위주로 구성되어 자료실은 빈약하고, 문화와 교육공간도 부족한 300석의 작은 규모 도서관이었다. 시민들의 정보제공과 문화향유를 담당해야 할 도서관이 기본적인 전산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였고, 자체 자료구입비조차 확보하지 않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해 자료를 구입했다. 직원들은 공부방 지키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배치되었고, 각 도서관의 사서는 한 명뿐이었다. 시민들은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간혹 시험기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외부 옹호그룹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주요 핵심 이용자 그룹을 조직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을 사랑하는 시민 소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세대 간, 집단 간,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용자 간담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위원 위촉, 시민 자원 봉사단 구성, 병영 및 학교 도서관 지원,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의 운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전하였다. 이런 실천활동을 통해 파주시 곳곳에 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거점을 마련하였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서관이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오히려 익숙하고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는 거주를 결정하는 제일의 요소로 도서관을 꼽을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2000년, 작은도서관을 고민하는 시민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런 실천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책’과 ‘도서관’에 관심 있고 책과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시민들과의 만남이었다.

5-2. 시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그동안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현존하는 작은도서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의미 있는 작은도서관 활동이 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 활동은 그 유형이나 운영주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제한이 따른다. 민간의 작은도서관에 공공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성’과 공공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적 이행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행정력이 미쳐야 할 대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과 공공성을 검증할 행정 이행절차를 제도적 장치로 일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과주시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은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간단한 법적 신고 절차는 당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¹⁾을 양산해내고 있었다. 과주시에서 처음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가 시작되었던 것은 2000년이다. 2000년 2개소에 불과했던 작은도서관은 2002년 11개소 달했다. 당시 작은도서관 지원은 경기도의 자료구입 보조금이 전부였다.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라는 공문에는 며칠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신청하라는 내용만 있었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지침이나 기준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때 선정방식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과주시도 당시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은도서관 2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 방법은 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작은도서관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즉, 11개의 작은도서관 중 2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때부터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준한 최소 설치기준은 너무나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은도서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운영 관리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신고 절차를 통해 운영하기 시작한 작은도서관은 이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설립자의 도서관 철학 부재에 기인하여 폐관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었다. <표 1>은 2000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작은도서관 신고 건수와 폐관 및 운영정지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신고 이후 절반 이상이 폐관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음

1) 도서관법 개정(2009. 3. 26) 이전에는 '문고'라는 명칭이 도서관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으로 통칭됨. 여기서는 법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용어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함

신고 절차의 용이성이 이후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빗대어 당장 법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처리하게 되었다.

표 1. 파주시 작은도서관 신고 현황 및 운영정지 현황
(2006년 10월 말 기준)

연도	설립신고 수	폐관 또는 운영정지
2000	6	4
2001	2	2
2002	6	4
2003	6	2
2004	3	-
2005	3	-
2006	3	-

5.2.1. 현지조사

이런 배경에서 신고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현지조사였다. 작은도서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과연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신고된 작은도서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설 현황, 장서 현황, 개관일수, 운영인력, 운영비조달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라서 운영동기나 운영방식도 매우 다양했다.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어린이 문화와 독서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문턱이 낮은 작은도서관부터, 개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독서지도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곳, 교회 예배당 한켠에 책을 쌓아 놓고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 친목과 회원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간의 모습은 다양각색이었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적 설립 신고 조항보다 구체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서관 하면, 공부방 공간으로 쉽게 인식되는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 속에서 아주 간단한 법적 기준으로 부지불식간에 계속 증가하는 ‘작은도서관’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도서관다운 도서관만 선별해내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5.2.2. 계획 수립

현지조사 작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전에 서류만으로 설립요건을 검토한 후 신고서를 교부했던 것에서, 이제는 바로 현지 출장을 나가서 법적요건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또한 법적요건에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신간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곳인지,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알릴 의지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현지 조사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으로서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도서관 평가 기준안의 바탕이 되었다. 2003년 말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총괄 계획안을 작성하고, 매년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도서관 적합성 여부가 검증된 곳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평가제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사회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평가제는 신고된 작은도서관이 연도별로 지원금을 나눠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

다. 이런 목적을 평가의 매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즉, 개인이나 개인에 준하는 민간에서 공공성과 지속성을 지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운 일임을 알고서도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도서관으로서 지녀야 할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둘러싸고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필수조건이었다.

표 2. 2006 파주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평가계획

1. **목적** : 작· 설립 신고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관적 평가방법과 절차를 제도화하여 우수 작은도서관을 발굴, 확산시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26조
3. **추진방침**¹⁾ : 약년도 예산에 준함²⁾
 -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사비 5천 원/개소당 이개소
 - 소외지역 작은도서관·도비 지원액에 따라 결정
4. **평가대상** : 설립신고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상 작은도서관 별첨] 서면평가서를 제출한 작은도서관 중에서 현지평가에 응한 작은도서관 단, 지원대상 제외 작은도서관
 - 평가대상일 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 현지평가 시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평가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평가 실시
6. **일정별 추진계획**
 - 12. 8 ~ 12. 19: 1차 서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서 제출
 - 12. 20 ~ 12. 30: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현지평가 대상 작은도서관 선정, 평가소위원회 구성)
 - 1. 8 ~ 1. 12: 1차 현지평가 실시 - 현지평가, 최종평가 회의
 - 1. 20: 평가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집행

이것은 평가기준이 타당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보완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평가제 실시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공개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그 절차는 첫째 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근간으로 한 평가 기본안을 작성하고, 둘째 그 기본안을 작은도서관 대표자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보충하고, 셋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점검하고, 넷째 작은도서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과 절차는 <표 2> <표 3>과 같고, 그런 절차를 통해 마련된 첫 번째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이 <표 4>이다.

표 3.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 절차

1. 평가 기본안 작성
2. 작은도서관 대표자 또는 운영자에게 평가 기본안 알림 → 의견 수렴
3.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심의 → 공론화 구체화
4.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현지평가 실시
5. 서면평가(1차)
6. 현지평가(2차)
7. 최종 평가 회의 →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 및 통보

- 2) 추진방침은 매년 예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함.
- 3) 전년도에 익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이므로 추경예산에 주로 편성되는 도비 지원액까지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에 준해 지원대상 결정함.

5.2.3. 평가기준의 내용

과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은 도서관 운영의 5개 요소인 시설, 자료, 인력, 재정, 이용자의 기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목적의 적합성: 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평가기준의 첫 번째 항목은 목적의 적합성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민간에서 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서관의 공공성은 개인이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도서관 운영자로 나서서 이후 닥칠 숏한 어려움을 감내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서도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도서관 서비스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현지조사를 다녀보면, 왜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도서관 운영 목적은 시민에게 정보제공, 문화향유,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서관’이란 이름을 걸어 놓고 도서관이 아닌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 거점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가기준 첫 번째 항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도서관을 설립한 것인지, 명칭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 이용자에게만 열려 있는 공간은 아닌지, 설립자의 운영목적과 운영방침이 도서관철학과 사명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도서관’을 하

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도서관의 철학과 사명에서 시작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향후 운영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시설의 적정성: 도서관으로서 적절한 공간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시설은 1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도서관장서와 이용자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기준 둘째 항목은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다. 시설이 법조항에 적합한지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지, 쾌적한 공간인지, 또한 가구 및 집기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서관법 조항에서 이미 최소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높은 시설 요건을 제시할 수는 없고,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점을 낮게 잡았다.

그렇지만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자료실 배치 및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용자들에게 효과적 동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③ 자료의 성장: 자료의 성장은 가능한가?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은 자료이다. 도서관이 다른 여타의 공공시설과 다른 점은 바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자료의 성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주로 봉사

대상이 어린이나 어린이와 함께 오는 부모들이라면, 더욱 더 자료의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남들이 폐기처분하는 기증도서만으로 도서관을 꾸려나가고자 한다면 신간구입이나 신간확보에 남다른 투자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향후 도서관 운영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다. 진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자료의 확보 및 자료의 성장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얼마만큼 잘 순환시키고 있는지 훼손이나 분실 없이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이것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 역할이 자료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항목의 배점은 다른 항목보다 훨씬 높다.

④ 운영인력: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서관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도서관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바로 주민과 밀착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주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비록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들과 더 가깝게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훌륭한 직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 활동가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사명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어도 개인적 사정으로 도

서관 활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에 의해 도서관 문을 닫게 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을 고민하여 도서관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도서관 운영팀장 및 담당자를 확보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곳은 지금 아주 우수한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즉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인력이다. 관리운영 인력이 있는지? 향후 담당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자원 활동가 구성 및 교육 같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인지? 전문인력(사서)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네 번째 항목에서 평가한다. 또한 이 항목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도 포함되어 평가한다. 이 부분 역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점이 높다.

⑤ 재정자립도: 운영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는가?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개인이 운영할 경우 이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교회 같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도서관 운영 자금 확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교회 역시 도서관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한다면, 교회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매달 도서관 운영비로 소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이 주민 모두의 요구와 관심 속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할 경우는 도서관 운영의 최소 경비를 위해서 회원 가입비, 문화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도서관 문턱을 낮춰야 한

다는 취지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개인이 운영할 경우의 재원 확보는 주민들의 후원회나 재단의 설립을 통한 후원금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재정자립도는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부분으로서, 운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⑥ 이용 현황, 문화교육활동, 홍보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노력을 하는가?

도서관이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갖추고 직원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다면 사회적 역할을 논할 수 없다. 도서관은 봉사대상자인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누구나 찾아가서 책을 보고 빌릴 수 있는 곳인지 잘 모른다.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 작은도서관이 어떤 서비스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도서관 현판을 걸고 도서관 개관시간과 개관일, 휴관일을 알리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도 알려야 한다. 1회 도서 대출수 및 1회 대출기간 및 회원가입 방법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독서교육 및 문화교육 활동들을 각 작은도서관의 준비정도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런 지속적 활동을 위해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 일지를 통해 이용자 입관현황, 대출현황 등의 통계수치를 잘 기록하여 이후 사업추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평가기준 다섯째, 일

급제, 여덟째 항목은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여 평가한다.

⑦ 절실한 필요성: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할 곳인가?

이것은 전체 도서관 건립 및 조성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보복지 측면에서 인구가 적고 소외지역일수록 오히려 작은도서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절실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은 미흡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평가항목이다. 그러나 이런 곳은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당초 우수한 작은도서관을 선별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상쇄되므로, 이 부분은 배점을 매우 낮게 잡았다. 이렇게 도서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은 한 번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지실사와 심의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 첫째의 작은도서관 평가제 실시 결과, 각 문항별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위원들의 사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두 번째부터는 현황을 반영한 계량화된 수치를 넣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표 4.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2004. 2. 14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로 통과)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100)
목적의 적합성	<p>★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은 무엇인가 · 작은도서관 설립취지(목적)는 무엇인가 - 교회운영, 독서지도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가 - 특정이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가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방침방향은 무엇인가 	10
시설의 적정성	<p>★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장서확충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 확장 가능한가 ·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가 ·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5
자료의 성장	<p>★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간은 책(또는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축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자료관리를 위한 지침(도서 구입방침, 도서관리방침 등)이 있는가 · 지난 1년간 장서증가량 월 신간확보 내역 · 자료의 관리내용 등록원부, 장서목록 비치여부, 구입기증에 의한 목록의 비치 여부 	20
적절한 인력	<p>★ 작은도서관은 관리운영에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원이 있는가 · 관리 운영 인력이 있는가 ·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는가 · 자원봉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어떠한가 	20
이용수칙 및 이용현황	<p>★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수칙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 개관일 개관시간 휴관일 대출책수, 대출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 지난 1년간 이용현황 월 이용현황 · 지난 1년간 대출현황 월 대출현황 	15

재 정 자립도	<p>★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재정확보방안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적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가(후원회, 입주대대표회의 결정) · 신간확보 비용은 있는가 · 연간운영비 소요내역, 운영비총당 방안 	15
문 화, 교육활동	<p>★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관(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책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 · 지역사회, 마을단위 주민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사례가 있는가 · 문화, 교육활동, 행사가 있는가 	5
지속적 홍 보	<p>★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관 현판이 있는가 · 회원확보를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 기타 작은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5
절실한 필요성	<p>★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을마다 고루 분포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이 없거나, 기타 문화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인가 	5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이 작은도서관 대표자들의 협의와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공표되자,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는 매달 적정금액의 자료구입비를 배정하는가 하면,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보는 기준이 널리 공유되면서, 신고된 작은도서관 중에서 어느 곳이 우수한 작은도서관인지를 누가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은도서관 평가사업에 도서관운영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지, 도서관 운영의 주요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

표 5.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2005. 12. 13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로 통과)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100)
목적의 적합성	<p>★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은 무엇인가(작은도서관 도서관 명칭 사용)(5) · 작은도서관 설립취지(목적)는 적합한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방향은 적합한가(3)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2) - 교회운영 독서지도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가(-2) - 특정의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가(-2) 	10
시설의 적정성	<p>★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장서확충 및 이용자 증가 등에 대비 확장 가능한가(2) ·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가(2) ·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1) 	5
자료의 성장	<p>★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간은 책(또는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를 위한 지침(도서구입 방침, 도서관리 방침 등) 및 자료구입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가(2) · 지난 1년간 장서증가량 월 신기록보 내역(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증가량 월 30권 이상 연 300권 이상(15) 월 20권 이상 연 150권 이상(10) 월 10권 이상 연 100권 이상(7) 월 5권 이상 연 60권 이상(5) 월 5권 미만(0) ※ 증가된 장서 질에 대한 평가 포함(산문우선 및 기증도서 유무 포함) · 자료의 관리내용 등록원부, 장서목록 비치 여부, 구입기준에 의한 목록의 비치여부(3) 	20
적절한 인력	<p>★ 작은도서관은 관리운영에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원이 있는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5) 교육관련 자격증(3), 문화관련 자격증 등(2) · 관리운영 인력이 있는가(5) ·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는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5), 5명 이상(3), 1명 이상(2) · 자원봉사 운영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인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 유무, 일정관리 유무 등 	20

<p>운영규정 (이용수칙) 및 이용현황</p>	<p>★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5) · 연 개관일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일 이상 (5), 200일 이상 (4), 150일 이상 (3), 100일 이상 (2), 100일 이하 (1) · 지난 1년간 이용현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5000명 이상 (5), 연 3000명 이상 (4), 연 2000명 이상 (3), 연 1000명 이상 (2), 연 500명 이상 (1) <p>※ 일일 운영일지 점검/전년도 대비 올해 이용현황 점검</p>	<p>15</p>
<p>재 정 지립도</p>	<p>★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재정보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적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가(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5) · 신간확보 비용은 있는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증기량 월 30만 원 이상 연 240만 원 이상 (10) 월 20만 원 이상 연 120만 원 이상 (8) 월 5만 원 이상 연 60만 원 이상 (5) 연 20만 원 이상 (1) <p>※ 연간운영비 소요내역, 운영비충당 방안 검토</p>	<p>15</p>
<p>문 화, 교육활동</p>	<p>★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관(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육 활동, 행사 운영 등이 있는가 (3) ·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p>5</p>
<p>지속적 홍 보</p>	<p>★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판이 있는가 (1) · 도서관(작은도서관)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이상 (4), 3회 (3), 2회 (2), 1회 (1) 	<p>5</p>
<p>절실한 필요성</p>	<p>★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을마다 고루 분포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이 없거나 기타 문화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인가 (5) · 인근에 정보제공,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 및 공공시설이 있는가 (-3) 	<p>5</p>

다. 특히나 운영위원 중 3-5명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17개에서 22개소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평가요소를 점검하였고, ‘평가결과서’도 꼼꼼히 작성하는 열의를 보였으

며, 그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 도서관의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향후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도 주요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서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 해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병행하는데 서면 평가서는 <부록 3>과 같다. 다소 복잡한 문항이지만,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 평가사업은 운영위원의 핵심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주시의 평가기준은 이후 성남시, 고양시 등 타 자치단체의 평가기준 작성에 영향을 미쳐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여 활용되고 있다.

5.2.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새롭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현실적 요구나 제반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도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 이후 각 위원들의 점수를 총괄한 후 다시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각각의 위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황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으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각 위원들의 점수를 총괄한 후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표 6>은 총괄회의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서면 및 현지평가 결과 지원대상 중 제외되는 작은도서관

1. 현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000 작은도서관 000 작은도서관
2. 공부방으로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순화문고는 지원
예) 000 작은도서관
3. 유료 독서시설과 병행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000 작은도서관 000 작은도서관
4.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위원평가 배점이 높은 순으로 00개 작은도서관 지원

이런 과정을 통해 평가위원들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고, 지원대상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적인 평가제 실시는 의회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해마다 작은도서관 지원예산도 조금씩 증가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예산 증액은 신중하게 결정했다. 초기에는 주로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률로 예산을 편성했고, 평가제가 정착되면서 시 자체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켜 나갔다. 실제로 지원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시 자체예산은 증액되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내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작은도서관 신고 수	17	21	23	28	37	38
지원금액 (천 원)	2,000	16,000	9,000	31,000	62,000	110,000
지원방법 및 지원 개수	평가우수 1개소	평가우수 8개소	평가우수 6개소	평가우수 차등 9개소	평가우수 차등 12개소	공모 평가차등

4) 평가대상에 속하나, 현지실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또한 평가제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원방법은 우수 작은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제 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우수한 작은도서관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원대상 중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면 안정적으로 자료구입과 운영비 일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자료구입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항목을 추가하였다. 다만, 그것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한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그래서 2010년에는 전체 작은도서관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을 우수 작

표 8. 2010년 시립 작은도서관 지원내역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 개수	지원액 (천 원)	지원내역
	계			110,000	
공모제	70㎡ 이상의 공공시설 또는 공동시설		2개소	48,000 (시)	자료구입비 운영비
평가 (서면 현지)	우수	꿈꾸는 교실 북새팜스프링, 한라버발디	3개소	30,000 (시)	자료구입비 운영비
평가 (서면 현지)	활성화 유도 지 원	하늘선 하안초록 책마을	3개소	7,500(시)	자료구입비
		꿀벌나무	1개소	1,500(시)	
		유승 우남 대방	3개소	3,000(시)	
조성 후 지원	거북(따주읍 연풍 3리/254㎡)		10,000 (도 3,000 시 7,000)	자료구입비 운영비	
	봉일천등용(봉일천고/217㎡)		(도 3,000 시 7,000)	자료구입비 운영비	

은도서관과 현재는 비록 우수한 수준은 아니지만,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은도서관은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자료구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였다. 이것은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춰가는 정도에 따라 사립의 작은도서관을 차등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2010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은 <표 8>과 같다.

5.2.5. 지속적 관리

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월 1회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정기적인 전수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아무리 우수한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예상 못했던 폐관의 위기를 겪는 도서관이 많이 있다.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운영자 가족이 병환에 걸렸든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든지, 주민 갈등에 의해 부녀회장이거나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임되지 못한다든지 해서 민간의 작은도서관은 미래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매년 실시되어야 하며, 평가 이후의 지속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 공동시설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도서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유형별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① 공동주택 유형

파주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유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팜스프링 아파트 봄싹도서관과 한라비발디 아파트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2003년 개관 이후 연 302일 개관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까지 지원하는 팜스프링 아파트 봄싹도서관은 현재 장서 8,630여 권을 넘고, 사서 1명, 도서관 운영팀장, 부팀장, 자원 활동가 13명으로 부녀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매월 40만 원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여 자료의 지속적 성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 개관 기념행사,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의 정보문화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체 운영이 안정적인 작은도서관은 파주시와 협력 수준도 높아 책 읽는 파주 사업의 주요한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라비발디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 개관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친화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연간 천만 원 상당의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이 보조금으로 실질적 운영에 활력을 갖게 되었다.

② 교회 유형

여타의 교회 주체의 작은도서관이 교회예배당 한켠에 서가를 두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꿀밤나무도서관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매월 58권 이상의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20명의 자원 활동가와 상근인력 1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③ 개인운영 유형

그 외 개인이 운영하는 유형으로 교하출판단지 내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연일 넘치는 이용자와 훌륭한 장서,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주민친화적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꿈꾸는 교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동네방네 책 토론방 사업에서 우수 동아리 시민제안 사업에 공모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독서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거북도서관은 문화 소외지역인 연풍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연 303일 이상 문을 열고, 꾸준히 신간을 확보하여 주민 정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거북도서관은 개인 소유의 건물에 자료를 구비하여 2004년 작은도서관으로 처음 신고한 도서관이다. 매년 도서관학교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갔고, 평가에서도 4년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거북도서관이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어 파주시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신청한 작은도서관 조성 건과 거북도서관에서 신청한 작은도서관 확충 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설이 아니라 운영자의 철학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마을회관이 아닌 개인 소유의 거북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으로 조성대상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의 철학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성 이후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 운영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해당 건물에 근거당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건물을 공공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 장치였다. 이에 대한 협약 내용은 〈부록 4〉와 같다. 이로써 거북도서관은 더 이상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④ 복지시설 유형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유형도 많다. 이 경우에는 도서관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소외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므로 지원의 당위성이 높다고 여겨지나, 실제로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으로 몇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가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으로 등록하여 다른 부서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후 이런 유형의 작은도서관이 줄어들거나 폐관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유형에는 순회문고를 통해 신간도서를 지원하거나 소외지역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후 문을 닫을 경우에는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구입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 다른 기관에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은 폐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간 운영이 안 되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1조의 2항에 의거 등록 취소했다. 그래서 파주시 작은도서관은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다. 최근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9.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	2010 말
작은도서관 수	4	6	11	17	21	17	21	23	28	37	38	22

이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지원을 하고, 미흡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며,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파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책임지고 협력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우수한 작은도서관은 책 읽는 파주 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포인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3. 시립 작은도서관과의 협력활동

5.3.1 도서관학교 개최

과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4년 작은도서관 평가제 도입과 더불어 시작한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도서관학교의 개최이다.

도서관학교의 목적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내실 있게 하면서,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과제 속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도서관학교의 내용에는 공공도서관의 역사, 공공도서관의 철학과 가치,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교육부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처한 현실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료구입에서 정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제, 자원 활동가의 교육 및 실제 등 운영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작은도서관의 주요 서비스가 어린이 서비스인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책과 어린이 문학에 대한 이해, 옛 이야기의 이해, 책 놀이터 등 작은도서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루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실제 운영 중인 관내 우수 작은도서관 및 타 지역 우수 작은도서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이론과 실재를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향후 과주시 작은도서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도 받았다.

도서관학교는 초기에는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받으면서 진행하였고, 이후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의 성장에 따라 협의회 측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수렴하면서 전체 도서관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어느 한쪽 입장에서 기획되기보다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은도서관 정책수립과 집행 담당자의 강좌를 두어 작은도서관 운영실무 및 평가기준 이해, 보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강사의 강의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도서관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에 유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간의 공감대와 유대감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유대감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를 막론하고 도서관을 고민하는 사람 간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현실을 시민들과 나누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 조직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가 전제된 만남에서 오는 원활한 소통과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강한 공감대는 사서와 시민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사회 도서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느끼게 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도서관학교는 매년 40명에서 6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내용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주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에는 도서관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한 기초과정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실재를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그 준비 주체도 공공도서관(또는 파주시)과 작은도서관협의회가 분담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표 10. 도서관학교의 주요 프로그램

강좌명	주요내용
개교식	소개하기, 인사하기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가치 이해, 도서관 조직의 특징 이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사 속에서 작은도서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 이해 시민참여의 유형, 협력을 위한 준비 지역사회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활성화 방안	왜 작은도서관인가? 작은도서관의 철학 이해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특성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방안
작은도서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에서 평가제 및 지원방안 안내 자료의 구입에서 정리까지 사례를 통한 교육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실제
도서관 자원 활동은 이렇게	작은도서관 자원 활동가의 역할 및 모집 및 교육체계 등
어린이 문학의 이해	어린이책의 역사, 옛 이야기 들려주기, 책 놀이터 등
도서관 견학	관내·외 우수 작은도서관 견학
수료식	도서관학교 수료 소감 나누기, 작은도서관협의회 안내 및 가입



도서관학교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견학

거북도서관 견학

5.3.2 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에게 도서관학교가 안겨준 감동은 대단했다. 곧이어 지속적 만남을 위한 협의체가 2005년 4월에 구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였다.

원래 파주시는 2003년에 이미 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발족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of 주체들은 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주로 협의회 차원의 단체활동에 치중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실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형태로 활동을 해왔으나 주도적 회원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그러나 2005년 구성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것은 도서관학교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향후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의지를 우선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자 했다. 소박한 발대식을 가지고 회원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매월 1회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때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도 월 1회 회의에 참석하여 도서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작은도서관 소식을 전해 들으며,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영상사업팀을 구성하여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는 빗그림 슬라이드 공연을 추진해왔고, 십시일반 기증받은 책을 서로 나누어 갖는 활동을 하거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2006년 4월 도서관 주간에는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빗그림 슬라이드 공연을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6개의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찾아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하는 우수 단체가 되어 지원금도 받았으며,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에서는 파주시 작은도서관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2009년에는 여름 연수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200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은 4-5개관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어, 파주시 전체 작은도서관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위상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아직까지는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정도로 그 결속력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담활동을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파주시와 작은도서관 간의 가교역할로서 그 위상과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려 한다.

5.3.3 작은도서관 지원 법제화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200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5차례나 바뀌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각 사업은 매 단계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문서로 처리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담당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협의회 회의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조금씩 축소시켰고,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도서관학교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과 당시 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의원의 협의를 통해 「과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부록 5)가 발의되었다.

그러나 조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회원 간의 충분한 논의, 공공도서관과의 협의 등 그동안 과주시가 유지해온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은도서관 조례가 존재는 하지만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 실효성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는 법 적용의 대상 범위가 공·사립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작은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위탁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도서관법의 개정(2009. 3. 26)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제시한 용어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과주시 도서관정책팀,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공도서관 조례개정 과정에 작은도서관 지원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정도이다. 아직은 그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4.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5.4.1. 공립 직영 작은도서관

과주시는 672.45km²의 광활한 면적에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 현상이 과주 남쪽에 치우쳐 있어 과주 북부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공공시설의 건립이 인구 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역시 금촌 교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중심으로 공립의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복원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과주시 도서관 협력시스템을 지역중앙관, 지역대분관, 소분관, 작은도서관의 협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전체 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당시 계획은 첫째,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한 개의 작은도서관에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예산팀과 인사팀의 결재까지 모두 마치고, 국장, 부시장까지 설득했으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의 사유는 인력 두 명에 대한 향후 처우방안, 냉난방비 소요 부분이었다. 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재차 상신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는 시기상조임을 깨닫고, 읍·면·동에 수시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을 조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매번 읍면동에서는 유휴공간이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 읍·면·동에는 문

이 잠겨 있거나 활용하지 않는 복지회관, 마을회관이 많이 있었지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데는 모두 소극적이었다.

2008년 파주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때 일정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여 3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것이 오늘날의 파주읍 술이홀 작은도서관이다. 술이홀은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술이홀은 이후 소관부서의 잦은 변동으로 인력 배치 이후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채, 일정시간 문을 열어 찾아오는 이용자에게만 서비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5.4.2. 공립 주민자율운영체제의 작은도서관

2010년 파주시는 '책 읽는 파주'를 시정의 주요 화두로 삼았다. 책 읽는 파주 만들기 첫 번째 과제는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곳곳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책으로 천명되면서 작은도서관 사업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5개의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예산확보 및 도서관 조성 공사에도 다른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조성은 하되 운영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아무리 작은도서관이라도 가장 주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배치임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재차 상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행히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0년 작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지원 예산 6,200만 원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 2,80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산 확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정책이 ‘지속적인 운영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입안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00개 조성’이라는 양적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입안되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의 기준은 공립에도 모두 적용되어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아우르고 도서관의 기본 요소인 시설, 자료, 인력을 갖춰가는 정책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조성을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의 증가는 5년 후 10년 후 또 다른 유희공간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과주시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차선택으로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리고 교육해서 도서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주민그룹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율 운영체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게되었다.

표 11. 2010년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도서관명	면적	위치	개관	운영인력
광탄	78㎡	광탄면사무소	2010. 3	총 17명 (명예관장 1, 상근실장 1, 자원 활동가 15)
월릉	70㎡	월릉면사무소	2010. 3	총 15명 (명예관장 1, 상근실장 1, 자원 활동가 13)
파평	90㎡	파평면복지회관	2010. 7	총 13명 (명예관장 1, 상근실장 1, 자원 활동가 11)
금곡	247㎡	(폐)금곡초교	2010. 11	총 11명 (명예관장 1, 상근실장 1, 자원 활동가 9)
금곡	115㎡	법흥리마을회관	2011. 3	추진 중

① 공간 확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공간 확보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농업인 상담실,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주민공간이 이미 활용되고 있었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협의하면서 각 읍·면·동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다녔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정 정도의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가속도를 더해갔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현실적인 요인으로 확장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한 것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월릉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나 면적에서 매우 열악한 공간이었지만 이미 청사관리팀에 의해 조성이 확정된 이후라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파평 작은도서관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라 기존에 확정된 56㎡ 규모의 작은 공간을 주민

자치위원회나 면장님을 찾아가 수차례 협의하여 90㎡ 규모로 변경할 수 있었다. 탄현면 역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접 조사한 후, 가능 후보지역 4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면장님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접근성과 면적을 고려하여 조성지를 선정하였다.

작은도서관의 공간 확보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각 부서와 읍·면·동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 부서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자의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목적인 바를 이루어낼 때까지의 집요함이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만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

공간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갖춰 공사가 완성될 즈음부터는 앞으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곳에서 주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려고 찾아가면 모두들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다. 읍·면·동 직원에게는 작은도서관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 자체에 모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학생도 없는데 누가 오겠냐,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고,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정책으로 갈아치워야 할 텐데……” 하면서 모두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설득가능한 분들부터 찾아다니다가 기획한 것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도서관에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조금이나마 수정해주고,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하고 친숙한 소통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하였다. 도서관 조성단계에서 주민설명회가 기획된 것도 처음이라 일단 공식적인 결재를 얻고, 국장님의 공식일정에 넣고, 읍·면·동의 담당직원, 담당 팀장, 면장까지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직접 농가 부녀회 및 마을 부녀회장 모임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읍·면·동의 주 연령층은 40대 이후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했다. 처음에는 남 얘기하듯 하시던 분들이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드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열게 된 주민설명회는 성공적이었다. 마을 주민자치위원, 이장, 부녀회장, 농가 부녀회장 및 마을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모였다. 국장님의 인사말씀도 있었고,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쉽게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의 훌륭한 가치를 어려운 용어를 섞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의지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주민설명회 내용은 아래와 같은 목적과 방향 속에서 준비되었다.

표 12. 주민설명회 내용

- 기존에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었나? - 학생들의 공부방
- 현재의 도서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정보, 교육, 문화 기능 수행
- 작은도서관이 생기게 된 배경? - 도서관이 너무 많다
-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 작은도서관 우수 사례 소개
- 현재까지 준비된 공간 소개. 앞으로의 할 일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 일정별 준비과정과 주민참여 방안 안내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사진자료를 많이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작은도서관 공부를 지루해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지역의 여러분들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까지 주민설명회의 성과였다.



파평 작은도서관 주민설명회

③ 주민 교육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팀 구성

주민설명회 이후 가장 큰 성과는 국장님, 과장님, 면장님과 직원들이 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잘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을 해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엿보았던 것일까? 그래서 이제는 읍·면·동 직원을 찾아가도 전처럼 무뚝뚝한 반응이 아니라, 친절하게 반겨주고 점심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을 정도까지 친해졌다.

다음 과제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갈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운영인력은 지역주민들 중에 도서관에 관심 있고 자원봉사할 의지가 있는 분으로 찾아야 했다. 먼저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던 분들이나, 해당 지역주민 중 기존의 중앙도서관 회원인 분들을 찾아 연락하고, 그 외 부녀회 및 지역의 여러 단체 명단을 확보하여 연락했다. 그래서 모인 분들과 함께 4-5차례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교육 내용은 작은도서관 역할, 공간구성, 자료구입 및 정리, 대출 및 반납, 문화교육 행사의 의의, 주민홍보 방안의 내용으로 그날그날 상

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어떤 날은 20명 넘게 모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1-2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다. 또 모임 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져서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게 몇 차례 주민모임을 가진 후 주민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명예관장, 상근실장을 뽑고, 자원 활동가도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문을 하나씩 맡도록 역할을 정했다.

작은도서관을 대표하는 명예관장은 안으로는 작은도서관 봉사자를 관리하고, 밖으로는 작은도서관 후원기업을 섭외하고, 도서관의 주요한 사항을 총괄, 관장하는 사람이다. 상근실장은 일상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일 업무일지 작성, 대출반납, 신간 도서목록 작성 업무와 자원 활동가의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 외 자원 활동가 중에서 도서관 운영계획을 담당하는 기획부장,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육부장, 홍보부장 등 해당 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각 자원 활동가들의 역할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팀의 단결력과 작은도서관 활동의 보람과 즐거움을 상기시키면서 주민교육 내용은 자연스럽게 개관식 준비로 이어졌다. 개관식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초청장과 소식지를 만들고 새로운 책에 라벨을 붙이거나 서가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은 조금씩 조금씩 도서관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월릉 주민교육



주민교육 후 도서정리



파평 주민교육

④ 작은도서관 개관

도서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이 과정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개관식은 이런 과정을 잘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였다. 홍보 동영상은 작은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의 이런 주민참여 과정을 담기 위해 제작하였다. 홍보 동영상에는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과정을 담고,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점 등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소식지 역시 그동안 주민들이 무엇을 함께 했는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주요 내용으로 만들었다.

개관식 준비과정에서 또 하나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동안 도서관과 안팎으로 인연을 맺어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이 주민교육을 할 때마다 도움말을 해준다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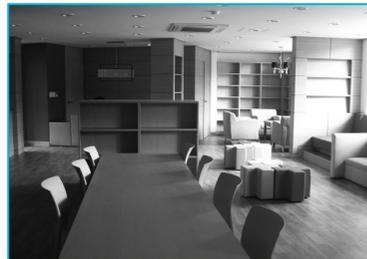
광탄 작은도서관



월룡 작은도서관



파평 작은도서관



금곡 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의 책글봉사단 회원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도움을 준다든지,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개관 부대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작은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도서관 활동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모습으로 작은도서관 개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을 도모했다. 그렇게 작은도서관은 차례대로 개관을 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파주시 전체에 퍼져나갔다.

⑤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도서관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료, 전문직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도서관 사서로서 이런 원칙과 현실의 불일치는 항상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 주민들의 현재의 자발적 의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과연 이런 주민자율 운영체제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의식과 실천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까? 무엇이 이것을 성장 가능하게 할까? 이런 질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준다.

작은도서관 운영팀 각각은 회칙을 만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파주시는 이 비영리단체에 도서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주민들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인력도 확보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도서관을 만들어가라는 취지였다. 이런 과정이 주민들의 진정한 자발성에 근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했다.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실천과제를 내주고 그것이 이행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격려했다.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학교 과정을 통해 원칙과 철학을 배우고,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는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간의 정보교류와 보조금 집행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하였다(부록 8). 상시적인 교육 내용에는 도서관의 정체성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사례들과 실제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손쉽게 기획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의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원으로 순회 사서를 채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꾸려진 작은도서관 운영팀이 이제는 책 읽는 파주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고, 책 읽는 파주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기획행사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되었다. 이런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서 시민들 각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날, 그때는 시민들 스스로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서관의 3요소를 갖추는 활동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믿는다.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이 활동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도서관을 위한 씨 뿌리기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5-5.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5.5.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성 시

작은도서관 가이드라인의 활용

과주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최근 아파트 신축이 매우 많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도서관법 시행령에 준한 작은도서관 시설을 조성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항이 최근까지 신규 아파트 건축 시행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건축부서의 인허가가 도서관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도서관 측에서도 이런 법조항 자체에 어떤 식으로 관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이런 법조항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 시행 계획단계 및 준공단계에서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이행여부 검토를 관련 부서(도서관)와 협의하도록 했다. 모든 건축 인허가 시 관련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토했던 연관 부서 이외에 도서관 부서를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협의과정도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시공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이미 시공이 완료된 준공허가 단계에서 협의가 된다면 사업 시행자를 강제하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피 과주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건축 시행 이전에 작은도서관 조성 설계에 관해 협의하고 이를 이행토록 건축업체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시공 이전 설계단계에서 협의되고, 준공 시 이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행된다. 이런 협조가 시공업체와 원활하게 된다면, 자치단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도서관법 시행령에 준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 매우 간단한 수준이라 자치단체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런 자치단체의 요구에 시공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래 가이드라인을 법적 강제성을 가진 요건으로 지침화하려고 했으나, 민선 5기 취임 이후 각종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미 제정된 강력한 규제 방침들이 완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으로 협의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협의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획단계에서라면 얼마든지 시공업체에서는 수용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주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제시한 설계도부터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때로는 설계도를 그려주거나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이미지 사진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세부 조항」(부록 6)은 김해시의 것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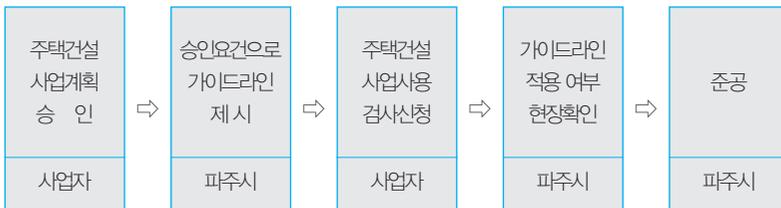


그림 13 파주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

5.5.2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공모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협의과정을 거쳐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2009년에 2개소, 2010년에 9개소에 달했다. 즉, 시공업체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성된 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 일부 도서관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이 산발적으로 아파트 공용공간 내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기는 했지만, 아파트 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이미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실제로 도서관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주민 공모제를 실시하였다. 공모제의 취지는 공동시설 내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실제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만들고,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론화시키고, 파주시 전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이 사업을 알려나갔다. 신청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립 아파트 도서관이 매년 평가를 거쳐 지원받았던 것과 달리 이 공모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협약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모제 시행과정에서도 기존의 사립 아파트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및 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이 힘을 갖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2개소와의 협약이 체결되고, 각 작은도서관에 주민운영팀이 구성되어 또 다

른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14. 작은도서관 운영 공모제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 공모제 시행계획 · 목 적 주민참여에 의해 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곳을 발굴 지원 · 지원대상: 70㎡ 이상의 공동시설 내 도서관 · 지원예산: 2개소 20백만 원(1개소당 10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단 지부담 30~50%) - 사서자격증 보유자 채용 시 인건비 50% 추가 지급(연 10,000천 원 이하) · 선정심의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 위원 및 도서관 운영위원 5명 · 선정기준: 지역의 잠재력(40), 사업수행능력(40), 정책의 효과성(20) ※ 제외대상: 2010 작은도서관 평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서관 직접적인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 등 공사비용

표 15. 공모제 선정기준

구분	내용 및 배점 (100)	세 부 내 용
지역의 잠재력	지역적 특성 (20)	· 주변 유사시설 존재 유무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등의 유무) · 신청지역의 인구 특성에 따른 필요성 정도 (결손가정 다문화세대 등 지역 인구분포의 특성)
	공간의 적합성 (20)	· 지역 주민의 접근성 · 확장 가능성(향후 장서 및 이용자 증가 대비) · 자료비치 이외 문화·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가 ·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위치인가(지상1층)
사업 수행 능력	목적의 적합성 (10)	· 운영방향(방향)은 적합한가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도서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의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가
	주민 참여도 (30)	· 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 등의 지원체계 확립 · 지부담 확보 및 운영지원 여건 (조직의 독립성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 · 사업에 대한 공감대·추진인지 형성 여부 및 협력적 참여체계 구축 정도
정책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 지속적 유지·활용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 · 타 공동시설로 확산 가능성

5) 당초 2,400만 원이었으나, 작은도서관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평가에 의해 지원되는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함

5-6. 파주시 사례 정리

지금까지 파주시는 현존하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파주시가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법제 및 기준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목적과 가치에 상응하는 실천내용으로 시민을 만나는 작은도서관을 구분하고, 진정한 협력 파트너 관계를 위하여 각종 법제와 기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작은도서관 협력의 근거를 공공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했다.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은 2004년 이후 꾸준한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작은도서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작은도서관 설립요건을 만들어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시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아파트 도서관을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실시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과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 끊임없이 필요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와 기준을 정비해나갔다. 이런 법제와 기준의 정비는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도서관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었다.

둘째, 담당부서 신설: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파주시에서도 초기에는 수서, 행사 업무를 수행하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담당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그러다가 점차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작은도서관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상담과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역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담당자 수준에서 보다 발달한 작은도서관 지원팀이 필요하다. 이 지원팀은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깊이 있고 심화된 내용의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일상화: 파주시가 작은도서관 업무를 통해 끊임없이 견지해 왔던 것은 시민참여이다. 파주시는 작은도서관 문제 해결을 시민참여 속에서 모색하고자 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민간 작은도서관으로부터는 운영자의 역동성과 건강한 사회변화에의 철학을 배웠고, 그 안에서 자치를 통해 성장하는 시민과 공동체를 통해 행복해하는 시민의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 해결책을 시민들의 의견에서 찾아가 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스로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도서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작은도서관 관련자를 참여시키고, 시민들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를 만들고, 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을 도와 도서관학교 및 각종 행사를 치러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의 관점을 지켜가고자 하였다.

넷째, 유형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의 모색: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이 존재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 그것은 도서관 확충의 욕구이며,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것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도서관의 목적과 가치로 견인해내는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과 도서관의 목적과 가치를 상기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상황에 맞게 견지해야 한다. 해당 작은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성장한 작은도서관이 그 성장 수준에 따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시행해야 한다. 그 협력 수준은 초기의 문화프로그램 공동시행 및 독서진흥 행사 공동주체 형태로 정보공유를 수행하면서 점차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 역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의 관점을 쌍방의 수준과 이해정도에 따라 점차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파주시 사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도서관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왔던 활동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타 시·군에서 파주시의 사

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의 환경과 이용자 분석을 전제로 하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과정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주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 자체보다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생성되고 정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질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방정부가 주민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시민을 행정의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며, 이런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은 시민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도서관'에의 충성도(loyalty)를 높이고, 도서관의 옹호그룹(Advocates)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김기영, 2008; Rowley, 1999).

또한 공공도서관 정책 생산 및 집행과정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주민이 공공정책의 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제로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5-7. 성과와 과제

5.7.1. 성과

파주시 사례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을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유형에 대해 공공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설립신고(또는 등록) → 교육 → 평가 → 지원 → 양성 → 도서관 수해인구 증가

표 16.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체계

즉, 법적요건을 갖추고 한동안 증가해왔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명확한 도서관 운영요건을 제시하여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을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파주시와 같이 광활한 지역 전체를 서비스하는 데 근거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하였고, 작은도서관의 이런 활동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여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확장되어 전체 지역도서관 발전 속에서 협력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수한 작은도서관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평가를 통한 지원에서의 마찰이나 차등지원에서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성과는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열람 시간 연장 요구라는 끊임없는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유독 공부방 기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도서관을 둘러싼 시민들의 인식이다. 그런 토양을 고려할 때 도서관이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고, 왜 도서관을 둘러싼 고민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 그런 조직화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간다는 것은 향후 공공도서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그룹은 공공도서관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시민 지원세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파주시 작은도서관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 정보 서비스 체계 확립’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관(官)은 관료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해 행정의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민(民)은 참여를 통해 행정체계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자기 결정력 및 판단력을 신장하는 자치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민관의 소통 증진은 작은도서관 현안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은 민관 모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었다. 자각된 시민의 이런 활동들은 지방행정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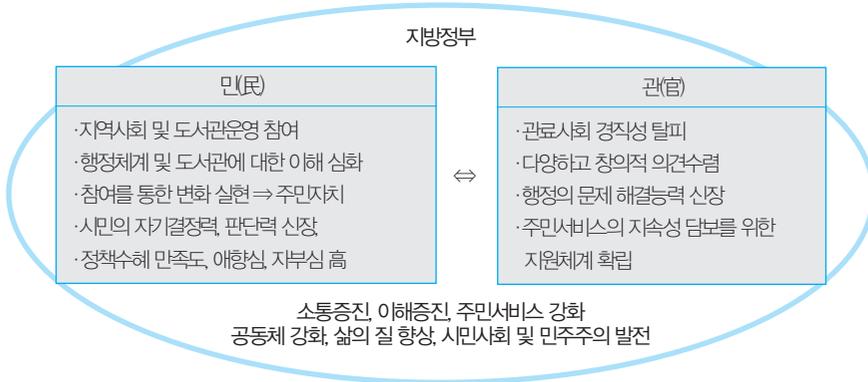


표 17. 작은도서관 정착 집행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의의

5.7.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의 과제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것을 공공도서관 측면과 작은도서관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첫 번째 과제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민과 협력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위해 시민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운동의 민관협력은 도서관 사서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직 운동과 더불어,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시민운동의 결합으로 이룩해야 한다. 즉 도서관 사서로서 전문성과 시민들의 자치와 공동체의 요구가 이룩한 작은도서관의 경험이 결합되어야 진정으로 전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서는 무엇보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의 목적과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하며, 그것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사서의 전문성은 ① 사서로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특히 공공도서관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상호 독립적인 지식영역들의 조합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까지 요구한다. ③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황 판단력, 체계적 사고를 포함하는 현장 적용능력,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즉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장에 적합하게 통합, 분류,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시의 적절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④ 시민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하고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문화 리터러시(Culture Literacy) 능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기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⑤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교수능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읽혀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시민과 교감하면서 공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윤명희, 2007). 이러한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의 두 번째 과제는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 도서관사(史)는 도서관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왔던 경험이 일천하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시민들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 중요한 책무를 등한시함으로써 시민들 알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향유의 권리가 감소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감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이런 시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내적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예산 및 인력 문제, 관료조직 문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문제를 적극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일상적 이용을 통한 참여, 자원 활동을 통한 참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과 같은 제도적인 참여, 그 외 다양한 시민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 지원 측면에서의 과제는 첫째, 여전히 너무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에서도 처음에는 주로 사립 작은도서관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전체 도서관 건립 계획 속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중앙관, 대분관, 소분관, 작은도서관 체계로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필요한 곳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었다. 공립 형태는 지원방식이 사립과는 일정 정도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지원금액이나 시와의 협력 정도에 따

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도서관 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즉, 작은 도서관의 설립 유형에 따른 지원 방식의 차이를 단순히 지원금액의 차이로 이해할 경우, 작은도서관 간 협력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시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합리적 근거로 일관된 방침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이런 유형의 차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협력을 어렵게 한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의한 운영체계가 다르다 보면, 함께 정보교류할 내용이 적어지고, 이것은 다시 협력과 결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유형을 일원화된 평가체계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제까지 과주시 작은도서관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민과 함께 도서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립되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주시 도서관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이런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라는 서로 다른 물적 기반이 존재하는 한 이 물적 기반에 근거한 이해관계는 조금씩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과

제는 이것을 차이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커다란 대의를 찾는 것,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각자의 물리적 기반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많은 사람들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이를 반증하기도 한다. 협력의 성공은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만 다른 한쪽이 성공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협력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협력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기본 원칙과 철학을 상기해야 한다. 도서관의 철학과 기본 원칙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난 동반자적 관계가 바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만남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동을 지역사회 및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해해야 한다. 시민 스스로 일구어가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운동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도서관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및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측면

에서 공공도서관은 끊임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 활동가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지원하고, 도서관 활동에 올바른 원칙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도서관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공공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도서관운동이 시민과의 교류 없이 폐쇄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범위한 시민 지원군을 얻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직이라는 안정된 직업으로 도서관을 선점했다는 우월의식보다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작은도서관 사람들에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친근한 서비스를 배우고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다시 공공도서관에 실천함으로써 작은도서관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역동적 실천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딱딱하고 두터운 자신들의 껍데기를 벗게 되고, 이로써 비로소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은 단순히 사서라는 직업군의 권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⁶⁾. 그것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문

6) 사서직의 직업정체성과 도서관이라는 조직 정체성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으며, 순기능적 관계에 있다(김기영, 2008).

화적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야말로 공공도서관의 기본 여건을 성숙시키는 데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참여 요구가 높고 역동적 실천력을 지닌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현재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지역사회 도서관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찾을 때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도 한층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바로 작은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서 경기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작은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공공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재원 확보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 정비 및 평가 시스템 도입,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업무를 공공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과제도 함께 풀어나갈 방향으로 실천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들의 도서관 운동이다.

이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식 전환을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춰 한층 진보된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형식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즉, 활동 목적을 작은도서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과 연장선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활동 모두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확대한다면, 그 명칭부터 공공도서관과의 대립적인 성격을 없애 버릴 수 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훨씬 더 대중적인 입장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우수 사례를 사서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훌륭한 실천 사례를 공공도서관으로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프로그램 개최, 홈페이지 및 안내 팸플릿 제작으로 공동 홍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시민 참여제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를 영입하여 제도적 장치 속에서 도서관의 각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해당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그 협력의 수준을 점차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내용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조례 역시 도서관법이 바뀌었어도 제대로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곳이 드물다. 그러므로 도서관법에 준해 지역 공공도서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함께 검토되고, 개정 내용에 포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천 과제를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현안을 풀어가게 될 것이다.

넷째, 모든 도서관에 적정 인력의 사서를 배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정원제 및 총액 임금제에 의해 신축도서관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앞서 현황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급봉사자들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는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서관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자료와 주민 공동체를 지향하고 민주적 실천의 장으로서 도서관 서비스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질적 성장을 위해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절한 인력 배치이다. 적정 인력을 통해서만 훌륭한 자료와 시설이 담보될 수 있고, 사람 중심의 훌륭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서관운동은 도서관에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거기에 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 도서관인들이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첫 번째 조건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도 많은 부분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서로의 부족한 힘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가면서 도서관의 철학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을 지지하는 시민그룹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자각된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도서관을 통한 시민의 삶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 다만, 도서관이 가지는 철학과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변하지 않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만남은 도서관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함께 할 새로운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형태의 만남 속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민과 경험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08.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313-333
- 김기영. 2008. 「이용자 대체 용어로서 고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235-253
- 김세훈 외. 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석. 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46
- 김준.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2006(3). 10-15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다케우치 사토루. 「책의 길, 도서관의 길: 고대조선에서 지금의 일본, 그리고 지(知)의 우주(宇宙)로」. 도서관문화. 51(12). 33-38
- 랑가나단. 2005. 최석두 역. 「도서관학 5법칙」. 한국도서관협회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어린이와 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사)어린이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07.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윤명희. 2007.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조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 이용남. 2009.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 본질을 되돌아본다-경기도도서관정책세미나 2009」. 광명중앙도서관
- 이용훈. 2004.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민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어린이도서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어린이도서관연구소
- 이진우. 2006. 「작은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재 외. 2007.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이해연. 2000. 「공공도서관 운영의 주민참여 방안: 지역주민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운영론」. 예영커뮤니케이션. 125-183
- 인천시 어린이도서관협의회. 201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시의원 간담회 - 인천시 작은도서관 토론회 자료집」
- 정현태. 200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집. 217-253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2010.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Gill, Philp. 2002. 장혜란 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한국도서관협회
- Rowley Jennifer, Jillian Dawes. 1999. 「Customer Loyalty - A relevant concept For libraries?」. Library Management, 20(6), 345-351
- 포럼문화와 도서관 www.libraryforum.kr
- 미국도서관협회
www.ala.org/ala/online/resources/slctdarticles/12wayslibraries.cfm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부록 1. 성남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⁷⁾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	평점 (100점)	증빙 자료
부 적 의 적 합 성	운영비 자부담 능 력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 도서관 설립취지(목적)는 적합한가?	15	현장 실사
		·월 20만 원 이상	5	
		·월 15만 원 이상	3	
		·월 10만 원 이상	2	
		·월 5만 원 이상	1	
	회비 징수 현황	·회원가입비 징수(유무)	5	
		·문화강좌료 징수 ·도서보증금(연간회비 포함) 징수	-5	
	운영 실태	·주변주민들에게 열람 및 대출	5	
		·주변주민들에게 열람 및 특정 소속회원만 대출	3	
		·특정 소속회원(공부방, 교회신도, 아파트 입주인, 특정단체만 공개 ·대출 미운영	1 -1	
사 실 의 적 정 성	면적	○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과 일정거리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15	시설 명세서 현장 실사
		·장서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75㎡ 이상	5	
		·장서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50㎡ 이상	4	
		·장서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50㎡ 이상	3	
		·장서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40㎡ 이상	2	
		·장서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33㎡ 이상	1	
	거리	·반경 1km 이내에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사립 포함)이 있다.	5	
		·반경 800m 이내에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사립 포함)이 있다.	3	
		·반경 500m 이내에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사립 포함)이 있다.	2	
	공간 여건	·반경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사립 포함)이 있다.	1	
		·도서관 전용공간을 위한 단독건물 확보	5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등	4	
		·임대건물	3	
자료 관리 프로그램	○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가?	15	구입 대장 영수증 기증 대장 (수량증) 자원도서 대장 (수량증)	
	·도서관리 프로그램 활용(목록DB화/대출·반납 등)	5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출·반납에 한정함	3		
·수기관리	1			
장서 증가량 <small>(연간+78%)</small> ※기증 50% 인정	·월 20권 이상 연 240권 이상	5		
	·월 10권 이상 연 120권 이상	4		
	·월 5권 이상 연 60권 이상	3		
	·기증확보만 50%	2		
	·분실 시 재구입(대장 관리)	5		
자원 도서 관리	·분실 시 재구입(관리)	4		
	·도서출처관리(행불, 제적관리대장 작성 등)	3		
	·도서출처관리(행불, 제적관리대장 미작성 등)	3		
	·도서출처관리(행불, 제적관리대장 미작성 등)	1		

관리	전문 인력 <small>지역중소지사</small>	○ 도서관은 관리 운영에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15	서서 자격 증 독서 관련 자격 증 자원 봉사 관리 대장
		·사서자격증소지자	5	
		·전산관련자격증소지자	4	
		·독서관련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자격증)	3	
		·유아교육자격증(유아교육, 학습지도사)	2	
	전담 인력 <small>운영 모형</small>	·전담인력 3명	5	
		·전담요원 2명	3	
		·전담요원 1명	2	
	자원 봉사자	·6명 이상	5	
		·4명 이상	4	
·3명 이상		3		
·1명 이상		2		
관리 실적	개관 일수	○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여야 한다.	15	대출통계 일지
		·연간 256일 이상	10	
		·연간 240일 이상	8	
		·연간 220일 이상	6	
		·연간 200일 이상	2	
		주간 운영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1일 7시간 이상		3	
	·주 5일 1일 6시간 이상	2		
적극 실적	대출 권수	○ 지역주민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대출 및 이용증대에 노력하고 있는가?	10	대출통계 일지
		·연평균 8,000권 이상	5	
		·연평균 6,000권 이상	4	
		·연평균 5,000권 이상	3	
		·연평균 3,000권 이상	2	
	이용 인원	·일일평균 50명 이상	5	
		·일일평균 40명 이상	4	
		·일일평균 30명 이상	3	
		·일일평균 20명 이상	2	
		·일일평균 10명 이상	1	
배우고 확장	문화 교실	○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관(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참여실적 자료 (사진자료)
		·5종 이상	5	
		·4종 이상	4	
		·3종 이상	3	
		·2종 이상	2	
		·1종 이상	1	
	동아리	·5종 이상	5	
		·4종 이상	4	
		·3종 이상	3	
		·2종 이상	2	
	·1종 이상	1		

지속 적 홍 보	현판	○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5	홍보 리플릿 현수막 (현장 실사)
		·현판 유	2	
		·현판 무	0	
	홍보 자료	·도서관 현수막, 리플릿 중 2개 이상 제작	3	
	·도서관 현수막, 리플릿 중 1개 제작	1		

7) 2011년부터 활용할 예정

부록 2. 고양시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구분	항목	배점기준	점수	비고
자료 현황 (25점)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간은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자료 수권 (10점)	- 8,000권 이상 (10) - 5,000권 이상 (7) - 3,000권 이상 (5) - 1,000권 이상 (3)		2010.1-9.
	연간 증가 자료 수권 (10점)	- 8,000권 이상 (10) - 5,000권 이상 (7) - 3,000권 이상 (5) - 1,000권 이상 (3)		2010.1-9.
	장서목록(5점)	- 보 유 (5) - 미보유 (0)		
이용 현황 (20점)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간은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면적(㎡) (10점)	- 100㎡ 이상 (10) - 75㎡ 이상 (7) - 50㎡ 이상 (5) - 33㎡ 이상 (3)		
	도서관리 프로그램(5점)	- 보유 (5) - 미보유 (0)		
	업무/이용자용 컴퓨터(5점)	- 2대 이상 (5) - 1대 보유 (3) - 미보유 (0)		
인적 자원 (15점)	작은도서관은 관리운영에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운영인력 (5점)	- 상근인력 (5) - 반상근인력 (3) - 비상근인력 (1)		
	사서/교사/독서 지도 독서관련 자격증 (5점)	- 보 유 (5) - 미보유 (0)		
	자원봉사자 수 (명)(5점)	- 10명 이상 (5) - 7명 이상 (3) - 3명 이상 (1)		2010년 3개월이상 봉사자
이용 현황 (25점)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 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사회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관일수 (10점)	- 230일 이상 (10) - 200일 이상 (7) - 150일 이상 (4)		2010년 말까지 운영 시
	대출 권수(권) (10점)	- 연 8,000권 이상 (10) - 연 5,000권 이상 (7) - 연 3,000권 이상 (5) - 연 1,500권 이상 (3)		2010.1-9.
	문화프로그램 수(회) (5점)	- 연 30회 이상 (5) - 연 20회 이상 (3) - 연 10회 이상 (2)		2010.1-9.
재정 상황 (5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재정확보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5점)	- 인장적 자원확보 가능 (5) (자부담, 후원, 주민단체 지원으로 운영비 충당) - 회원 회비로 일부 충당 (3) - 운영비 확보 불가 (1)		

운영 기간 (5점)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설립연도 (5점)	- 3년 이상 (5) - 2년 이상 (3) - 1년 이상 (1)		
홍보 활동 (5점)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작은도서관의 존재와 활동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³⁾		
도서관 현판 (3점)	- 보 유 (3) - 미보유 (0)		
도서관 홍보실적 (2점)	- 있 음 (2) - 없 음 (0)		

부록 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서면평가서

파주시 작은도서관 서면평가서⁸⁾

■ [목적의 적합성]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1. 명 칭:

2. 주 소:

전화번호: / 작은도서관 전화설치 유무 (유, 무)

3. 대 표 자:

4. 설립취지: (설립취지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① 교회운영, 유료 독서지도 등 작은도서관 이외의 다른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가?

② 상기의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5. 운영방침(방향):

6. 봉사대상 인구: 명

(주요 봉사대상 인구에 대해 현황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기록하세요.

예시: 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방과 후 어린이들이 주 이용자이며, 오전 중에는 지역의 주부 및 노인 등의 이용도 간헐적으로 있다.

7. 개관연월일:

<개관 후 약사>

■ [시설의 적정성]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1. 작은도서관 기능을 하는 공간 면적: 연면적 m^2 (평)
2. 작은도서관의 위치(해당 건물 내 층수): 층
3. 열람석(또는 이용가능 인원 수용규모):
4. 작은도서관이 있는 건물 명칭:
5.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가? (타 기능의 시설과 병존하는가의 여부)
6. 지역의 중심부, 번두리, 외곽 등 지역 내 위치와 주변시설 등에 대해 기록해 주시오.
(입지조건)

8)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조사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자료의 성장]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간은 책(또는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 자료현황 (2004. 10. 30일 현재)

현황	비도서	연속간행
_____권	시청각자료 _____권 전자자료 _____권 기 타 _____권	_____권

2. 자료관리를 위한 계획이나 지침이 있는가?

·예 (있으면 별첨해 주시오) ·아니오

3. 지난 1년간 장서증가량: _____ / 월 장서증가량: _____

4. 도서 구입 주기: 연 _____ 회 (월 _____ 회)

5. 자료의 관리를 위해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대장의 종류를 적으시오.

(등록원부, 기증도서 목록, 구입도서 목록, 대출반납대장 등) 관련자료 첨부

6. 자료의 등록 및 관리 방법: ·수작업 ·전산

7. 자료의 전산화가 완료되었는가? (전산화 정도)

·사용 중인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구축 정도: 전산화 도입 시기:

DB구축 자료 수: _____ 권 (현재 전체장서의 _____ %)

·향후 전산화할 계획이 있는가? ·예 ·아니오

8. 기타 자료 확충과 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쓰시오.

■ [인 력] 작은도서관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사서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있는가?

2. 관리운영 인력: 총 명

3. 자원봉사자: 총 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운영 방법을 쓰시오.

4. 조직도가 있다면 그려주세요.

5.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 등의 조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수: 개

- 위원회 명칭:

- 위원회 구성인원: 명

- 위원회 주요활동:

- [이용수칙]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합니다.

1. 도서관 이용수칙이 있는가? ·예 □ (이용수칙 별첨) ·아니오 □
 도서관 이용수칙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2. 개관시간:

3. 휴관일:

4. 대출책수: 권 (도서를 대출하지 않는 곳은 '대출 안 함'으로 쓰시오)

5. 대출기간:

6. 자료의 이용

(2004. 10. 30일 현재)

이용현황		대출책수		이용책수		개관일
연 이용자	1일 평균 이용자	연 대출책수	1일 평균 대출책수	연 이용책수	1일 평균 이용책수	

* 1일 평균 이용자는 연 이용자를 개관일로 나눈 수치입니다.

* 대출을 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이용(열람) 책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관련자료(운영일지) 첨부

■ [재정자립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재정보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1. 운영비 소요내역:

2. 운영비 조달 방안:

3. 후원회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후원회원 수: 명

· 후원회 활동내용

4. 도서(또는 자료) 구입비는 있는가?: 연_____원, 월_____원

- [문화, 교육활동]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관(지역사
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독서교육, 문화, 교육활동 등 행사를 추진하였는가?

(추진하였다면 행사기간, 내용, 참석자 등 행사개요를 쓰시오)

- [지속적 홍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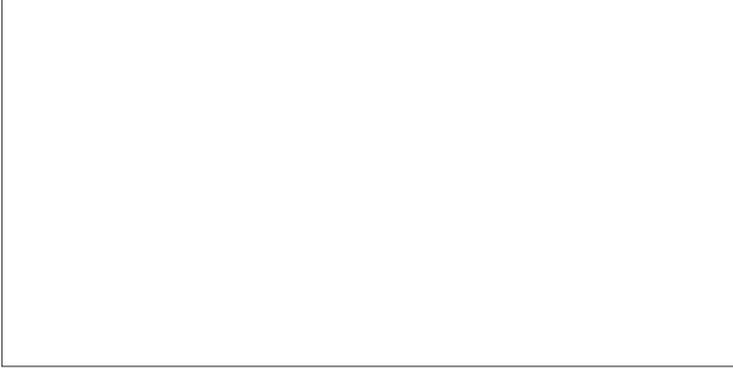
1. 도서관 현판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2. 회원확보를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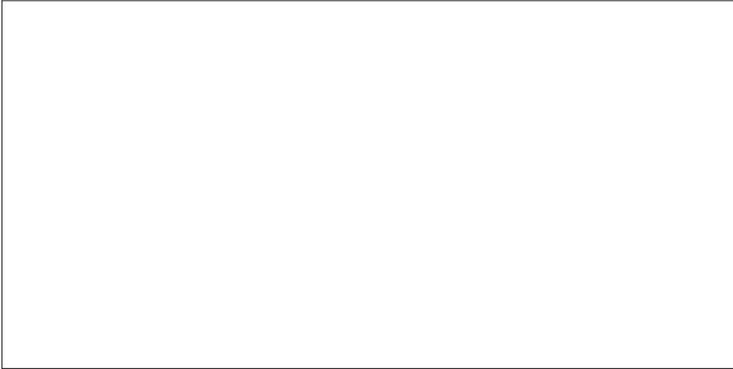
3. 기타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
가?

[작은도서관 전경 사진]

▶ 외부 [작은도서관 현판이 있는 곳]



▶ 내부 [도서 등 주요시설물이 있는 곳]



번거로운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평가지는 파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파악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에 토대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의: 940-2651 윤명희)

부록 4. 거북도서관 근저당 설정 협약서

제3자 소유의 대지에 건물증축 지원 계약서

파주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계약서 말미에 서명한 문고대표자 또는 문고운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6년 월 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51번지에 소재하는 문고시설의 건물증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06년 경기도 작은도서관(이하 '문고'라 한다)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신고된 문고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문고 시설 증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문고'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2항에 의거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2. '신고'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거 신고요건을 갖추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문고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목적물)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제4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신고의무)

읍은 건축물 준공 등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시설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필하고 기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원조건으로서의 문고의 계속적 운영)

읍은 이 건 계약기간 동안은 문고운영을 계속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문고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협의)

읍이 위 신고의무 및 문고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갑은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증축건물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을 계약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운영개입 및 재산권행사 금지)

갑은 읍의 문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개입을 할 수 없으며, 갑이 이 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거나 계약에 기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 제한의 해제 및 말소

제8조 (대지 및 건물 소유자인 제3자의 동의)

을은 증축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계약에 규정된 대지 및 건물 증축에 관한 규정 전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대지 및 건물소유자가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제9조 (가처분 혹은 가압류 등의 말소의무)

을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가처분 및 가압류의 제한이 있는 경우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수허가 의무)

을은 지원대상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고, 무허가건물인 경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당권 등의 말소)

을은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를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증축건물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로서 (근)저당권 말소가 어려운 경우 갑에게 채권자, 피담보채무액, 상환방법, 상환예정기간 등의 내역 및 향후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갑은 그 내역 및 처리계획이 향후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반려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물권 등의 소멸)

을은 대지 및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이 건 대지 및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 위에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진 제3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용역권을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 증개축·개보수 지원

제13조 (증개축·개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책임)

1. 갑은 갑의 책임 하에 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시설의 종류, 생활자의 성별 및 인원 등을 고려하고 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활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한 공사도급계약, 비용의 지급,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진다.
2. 을의 책임 하에 공사할 경우 공사도급계약, 비용의 지급,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지며 갑은 을이 추진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리를 가지며 을은 갑의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분제한)

이 계약일로부터 을은 대지 및 건물소유자가 이 건 대지 및 건물의 전부 및 일부에 관하여 매매, 담보제공, 임차권 및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제14조 (근저당권의 설정)

같은 대지 및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계약 당시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건물 증개축 기자재 구입 등 지원금액의 1.5배 범위 내의 액수를 채권 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을은 대지 및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이 조항을 이행하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증개축 또는 개보수한 건물에 관한 사용

제15조 (용도제한)

을은 이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문고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수익에 관한 전권부여)

을이 이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문고시설로 사용하는 한 을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권을 갖는다.

제17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을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건축물의 구조 변경에 대한 협의)

을은 이 계약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갑과 협의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상회복의무 면책 및 유익비 등 청구 포기)

을은 이 건 건물을 갑에게 명도할 경우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유익비 및 필요비에 관한 청구는 포기한다.

제20조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으로서의 을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부수사항

제2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갑은 을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고 이 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략-

제22조 (해제 및 해지의 효과)

1. 지원금 반환: 을에게 위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제반 비용일체 및 그에 대하여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가산한 금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2. 근저당권 등 행사: 갑은 을이 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지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갑이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지 및 건

물의 매수가격은 갑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한다.

3. 시설운영권 이양: 갑은 위 재산권행사와는 별도로 을이 운영하는 문고시설이 법령에 위반할 경우 대표자 교체, 시설운영권 이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한다.
4. 기타: 갑은 그 외 이 건 계약과 민법 및 도서관 관련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문고시설의 이전)

을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하며, 갑은 이 건 계약상의 지위를 을이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승계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이전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문고대표자의 사망)

을이 사망한 경우 이 건 계약은 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되거나 상속인 중에 문고를 계속 운영할 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갑과 시설운영을 계속할 방법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지며, 상속인은 이 계약의 대상이 된 목적물을 갑이나 문고시설을 계속 운영할 자에게 우선 매도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반비용의 부담)

이 건 지원의 진행을 위한 실사, 등기, 근저당 설정 등 사업관련 제반비

용은 총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26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기간)

이 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시·도에 즉각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아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되, 이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갑이 소재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민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06. . .

갑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을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대지 및 건물 소유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부록 5.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1-14 조례 제8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문고”라 함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의해 등록된 문고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

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

제3조 (설립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이 제외된 순수도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2. 20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최소 연면적 70㎡(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운영)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3조의 설립기준 등을 갖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2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운영자가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및 사립 문고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 ① 작은도서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과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과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 (위탁계약)

-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 및 사립 문
고에 대하여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6. 파주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이드라인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가이드라인

제1조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파주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파주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모든 작은도서관에 적용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제55조 제5항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하는 작은도서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설립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 【위 치】

1.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공동시설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는 지상 1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1층 이외의 공간에 위치할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의 경우에는 환기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규 모】

관련법에 준하되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면적 및 장서 수를 준용한다.

제5조 【공간구성】

1.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듯한 공간으로 기둥이나 벽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어 나누어지지 않게 한다.
2. 교육, 발표회장, 영화관람, 모임 등의 다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3.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한다.
4. 입식과 좌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전관을 온돌 공간으로 구성한다.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전기온돌판넬, 전기필름, 지역난방 등으로 선택하되, 서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시공방법 채택
5. 공간 조성 시 설계도면 확정 전 해당부서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6조 【내부시설】

1. 전기·통신

- ①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LAN 시설을 설치한다.
- ② 전기용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부하용량을 산정하여 전기가 공급되도록 설계한다.
- ③ 메인 스위치는 관리공간에 가깝게 설치한다.

2. 조명

- ① 300-600 룩스
- ② 책 읽기에 편한 간접조명, 아늑한 독서 공간을 위한 부분 조명등을 설치한다.

3. 가구

- ① 서가는 벽면 배치 또는 벽부형 서가를 제작한다.
- ② 칸막이 형의 공부방 책상은 제외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를 배치한다.
- ③ 서가는 한 단의 높이는 최소 300, 깊이 최소 250mm, 한 칸의 가로 폭은 휨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600mm에서 700mm 정도로 한다. 단, 폭이 더 넓어야 할 경우에는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단을 만들어야 한다.
- ④ 도서관의 추가 및 희망 장서 수 이상의 책이 꽂힐 수 있는 서가를 확보한다.
- ⑤ 안내대(대출대)의 높이는 장애인과 유아와 초등학생을 고려하여 70-75cm으로 한다.

제7조 【적용시점】

본 가이드라인은 결재 완료 후 시점부터 적용토록 하며, 필요 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부록 7. 공립 작은도서관 월별 현황 자료

파주시 작은도서관 월별 현황(11월)

결재	담당	팀장	과장

(2010. 11. 30 기준)

구분	월통		광탄		파평		금곡			
개관일	2010.3.30		2010.3.30		2010.7.21		2010.11.10			
개관입수(누계)	205		211		110		18			
면적	70 m ²		78 m ²		90 m ²					
인력현황	명예관장	1		1		1		1		
	상근인력	1		1		1		1		
	자원활동가	13		15		9		7		
	계	15		17		11		9		
자료현황	도서-일반(권)	1,246		1,180		1,033		1,164		
	도서-아동(권)	1,046		1,416		738		1,105		
	계	2,292		4,350		1,771		2,269		
	연속간행물(종)	신문	1		6		0		1	
	잡지	21		33		0		0		
이용현황	회원수	220		350		103		44		
	입관현황(명)	구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일반	299	2,140	278	2,934	131	887	63	63
		아동	174	1,255	170	1,416	56	665	243	243
		총계	473	3,395	448	4,350	187	1,552	316	316
	1일평균	14		17		7		17		
	대출자수(명)	일반	114	795	132	1,231	66	324	16	16
		아동	61	523	91	568	34	203	37	37
		총계	175	1,318	223	1,799	100	527	53	53
		1일평균	7		8		4		3	
대출책수(권)	일반	184	1,240	175	1,902	114	498	20	20	
	아동	112	656	197	1,131	27	310	56	56	
	총계	296	1,896	372	3,033	141	808	76	76	
	1일평균	11		14		6		4		
보조금사용현황	구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상근인력비	₩1,074,785	급여, 세금	₩1,015,420	급여, 세금	₩1,015,435	급여, 세금			
	도서구입비	₩486,840	69권	₩54,040	도서구입	₩619,590	도서구입	₩0		
	행사운영비	₩24,000	상인 아동 프로그램 준비물	₩7,500	매트구입	₩36,950	체험학습준비물	₩0		
	일반운영비	₩20,500	회환 잡지	₩502,500	잡기 사무기구입	₩467,580	잡기 사무기구입	₩308,300	잡기 사무용품	
	11월 운영금액 합계	₩1,806,125		₩15,9460		₩2,139,555				
현재 남은예산총액	₩3,196,161		₩2,021,443		₩1,672,650					
자원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실적 제외)	구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활동인원	38명	281명	28명	305명	13명	91명	7명	7명	
	활동시간	99	958.2	50	1,392.5	51	296.8	48	48	

부록 9. 작은도서관 월례회의 자료

제4회 작은도서관 월례회의

- 일 시: 2010. 12. 06(월) 10:00
- 장 소: 파주시청 상황실
- 참석자: 총 15명/월롱, 광탄, 파평, 금곡 작은도서관 관장 및 담당자
힐스테이트, 휴먼빌 작은도서관 관장 및 운영자
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정책팀장, 작은도서관 담당자, 순회사서

【 회 의 안 건 】

1. 각 도서관 현황 및 정보교류
2.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확보: 잠재적 이용자의 적극적 유치방안 모색
3. 주제가 있는 책 정보 ① 어린이 프로그램 기획정보 제공
4. 기타 현안사항: 보조금 집행에서 '자원봉사실비보상' 항목은 필요한가?

1. 각 도서관 현황 및 정보 교류
2.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확보: 잠재적 이용자의 적극적 유치방안 모색
 - 공공성이란 무엇이며, 도서관 서비스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 잠재적 이용자의 적극적 유치방안
 - 언론매체 활용: 지역신문, 방송 보도

- 인쇄매체 활용: 소식지 - 학교, 어린이집, 인접 공공기관, 반상회 등
- 온라인 활용: 페이스북, 카페 등
- 지역주민의 수준, 연령 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 ex1) 파평작은도서관: 노인 인구 전체 25%로 많음,
노인대상 프로그램 기획하여 주민 홍보
 - ex2) 동네영화제: 주말 가족영화 한 편 모여서 보기
- 인접 공공도서관 및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기획
 - 참고도서: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도서관 친구들 이야기,
 - 가볼만한 곳: 작은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고양시),
느티나무도서관(용인시), 꿈꾸는 교실(교하)

3. 주제가 있는 책 정보

- 어린이 프로그램

1) 의의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프로그램이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과 책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써 어린이에게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습관을 길러주며, 좋은 독서 습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능력 개발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목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이 좋은 책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교량적이

역할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교과학습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책이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 왜 해야 하는가? - 도서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인지를 고려
- * 할 수 있는가? -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인적자원, 공간 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는지를 고려
- * 효과가 있는가? - 도서관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4) 도서관에서 진행된 어린이 프로그램의 예

- * 진행 도서관: 대전 가오도서관
- * 프로그램명: '책 친구'
- * 프로그램 설명: 책과 친구되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넣고 싶었으나 너무 많은 활동으로 전개되면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림책 읽기를 미술과 연계, 구연 동화와 연계, 인형극과 연계하여 강사선생님들의 특기를 살려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 함께 계획했다.
- * 프로그램 개요(총 10회 실시 중 3회의 예를 참고 - 생략 -)

5)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예

* 독서만화 그리기: 독서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간단한 글과 함께 구성하는 활동이다. 작품의 인상적인 핵심 부분을 그리거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풍자성 있는 장면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 책 표지 만들기: 도서를 읽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준비하고, 이어서 책 표지에 도서명, 저자, 그림이, 출판사 등을 기입하여 표지에 나와 있는 장면도 함께 그려 책 표지를 꾸밀 수 있다.

- 책 표지를 나름대로 꾸미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뒷이야기 상상해서 쓰기: 책을 읽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상상해보도록 한다. 이때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작성하도록 한 후, 원래의 이야기와 자신이 이어 쓴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적인 낱말을 통해 연상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참고 사이트

분야	명	인터넷 주소	비고
독서 문화	아침독서신문(신문)	http://www.morningreading.org	
	도서관 옆 신호등	http://www.kidstd.com/	
	글나라	http://www.gulnara.net/index.html	
	오른발 왼발	http://www.childwed.co.kr/	
	어린이도서연구회	http://www.chilbook.org/new2/index.html	
	책따세	http://www.readread.or.kr/	

분야	명	인터넷 주소	비고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http://www.nlcy.go.kr/	프로그램 아이디어 운영전략 분류
	서울시립 어린이 도서관	http://www.childrenlib.or.kr/	
	노원 어린이 도서관	http://www.noeonilib.seoul.kr/	
	부평 기적의 도서관	http://www.bpml.or.kr/	
	인포 어린이 도서관	http://www.inpyolib.or.kr/	
	서울시립공공도서관 통합검색	http://210.117.214.245/libmeta/index.html	

7) 참고 도서

오진원/「오른발 왼발의 독서학교」, 엄혜숙/「나의 즐거운 그림책 읽기」, 와키 아키코/「그림책에서 이야기책까지」, 백화현 등/「학교도서관에서 책 읽기」,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독서교육 길라잡이」, 김진향/「책 먹는 아이들」, 김은하/「영국의 독서교육」, 부평기적의도서관/「그림책으로 세계 친구와 만나요」, 권미숙·조정연/「글자 많은 책도 그림책만큼 좋아하게 만드는 독후활동 117가지」,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책속 보물찾기」, 이상금 편/「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4. 보조금 집행기준 및 자원봉사 실비 지급에 관한 논의

〈인건비〉

- 월 1,030,000원
- 계약금: 950,000원(실 수령액: 876,015원)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료구입비〉

- 월 485,000원
- 다량구입 시 할인을 적용
 - 정기도서 구입: 일정기간별 1회 구입
 - 희망도서 구입: 수시구입체제로 빠른 도서제공활용

〈일반운영비〉

- 월 200,000원
- 사용가능 범위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보험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 의무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등

※ 자본적 경비를 제외함(단가 100,000원 이상 or 내구연한 1년 이상 제품)

〈행사운영비〉

- 월 285,000원

- 사용가능 범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불가

- 자원봉사실비: 80,000원 이내

1일 4시간 이상 봉사자 8,000원(식사비, 차비) 실비지급 가능,
자원봉사 실적인정 안 됨. (자원봉사센터)

- 봉사실비 지급의 여러 가지 사례 토론 후 장단점 비교 분석: 자관의 회원 및 관장과의 토론에 의해 자관 방침 결정 후 처리할 것 제안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료구입비 지출에 따른 첨부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계산 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전표, 검수조서

5. 기타 현안사항

- 보조금 정산 준비: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 및 정산서 준비(1월 15일까지)

- 다음 회의 주제: 주제가 있는 책 정보: 노인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 방안

부록 10.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2010. 11. 4 기준)

연 번	도서관명	주소	연면적	열람석	장서	회원수	등록일
1	하안초록도서관	아동동	825	30	3778	64	2002.07.10
2	한리버힐디아파트 도서관	조리읍 대원리	330	60	16,290	1220 세대	2003.07.08
3	거북도서관	파주읍 연풍3리	178.4	54	7943	554	2003.09.06
4	봄씩도서관	아동동	792	16	8,630	2322	2003.11.19
5	적성어린이문고	적성면 식향2리	201.34	30	4,000	받지 않음	2003.11.17
6	대방열린도서관	아동동	80	15	5,594	960	2003.11.27
7	유승한내들도서관	검산동	60	20	4,700	307	2004.02.06
8	성원도서관	검산동	60	20	4,011	220	2004.07.13
9	꿀밤나무도서관	금촌동	60	32	5,306	1191	2005.06.02
10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교하읍 문발리	30	40	10,700	120	2006.10.13
11	하늘선도서관	금릉동	93	12	5,345	347	2006.11.02
12	IPARK문고	교하읍 아당리	70	12	4,700	300 세대	2007.11.29
13	봉일천동용도서관	조리읍 봉일천리	353.44	63	6,404	1072	2008.10.30
14	주안여행복합교회 꿈꾸는도서관	교하읍 아당3리	66	12	2,453	105	2008.07.15
15	책보고놀자	탄현면 대동리	130	30	5,000		2009.03.05
16	큰빛어린이문고	교하읍 문발리	374.4	35	3,000	60	2009.05.08
17	에뜨라북카페	문산리	82	40	4,000		2009.05.13
18	행복동네도서관	금촌동	33	10	2,608		2009.07.03
19	책마을도서관	교하읍 문발리	103.7	25	17,000	131	2009.08.13
20	비전평화도서관	파주읍 연풍2리	267.3	20	10,442	91	2009.05.09
21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문산읍 당동리	111.05	36	1,824	631 세대	2010.07.05
22	별방작은도서관	교하읍 아당리	84.5	39	3,000		2010.10.29



Ⅱ
어린이와 함께
꿈꾸는 작은도서관

- 파주시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운영 사례 -

황수경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의 시작

2001년 6월에 꿈꾸는 교실은 등지를 텃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차 지나가는 걸 보기 힘든 다올리에, 인적이 드문 동네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오고가는 이 없는 곳에 일부러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다.

고양시에서 교육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나는, 마을에 아이들이 갈 만한 장소가 없어 아쉬웠다. 마을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었다. 학교운동장 농구대는 큰 형들에게, 아파트 안의 놀이터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동네를 배회하던 아이들은 문방구 옆 백 원짜리 조그만 게임기 앞바닥에 앉아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면 안 주인공에 열중했다. 그나마 마을 상가의 비디오 대여점이나 만화 대여점은 아이들의 숨통이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책이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이었다.

서울에서 살다 고양이나 과주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외감이 있었다. 서울을 떠나 낙향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문화적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공연이나 전시회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그 공연을 보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동화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금은 교하지구, 운정지구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때의 다울리는 가끔 오고가는 차량과 아침 일찍 나서면 고라니나 노루를 볼 수 있었다. 새로이 건설된 아파트단지가 막 입주를 시작했고 우리 도서관 옆 아파트는 한창 공사 중이었다. 인적 드문 곳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더니 모두 한숨 섞인 축하를 해주었다.

모두의 근심을 안고 출발한 꿈꾸는 교실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용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1~2년이 지나자 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꿈꾸는 교실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이들의 삶과 학부모의 교육관 등과 맞지 않았을까 싶다. 더구나 과주라는 불모지(당시 입주한 엄마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다)에서 꿈꾸는 교실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공도서관에서 받지 못하는 따뜻한 소통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프로그램, 아이들 책을 통한 새로운 발견, 교육을 통해 성장해가는 부모들의 모습 등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갔다. 그림책 공부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는 부모의 모습, 그런 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끼치는 많은 영향력을 느끼게 되었고 소중한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이란 공간은 소중하니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짝트게 되었고 십시일반 회비와 자원봉사로 메워지기 시작했다.

책 한 권 한 권이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힘으로 자리 잡아 갈 때 모두가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도서관에 오래된 책을 보면 7~8명의 기증자 이름이 담겨 있다. 베품시장이나 아이들의 노력으로 한 권 한 권 구입한 책들이다.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 어느 달은 책 한 권 못 살 때도 있었다. 그때만큼 속상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주변에서 그런 나를 볼 때 모두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때론 정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용자와 함께 해결하고 싶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우리는 함께 이끌어올 수 있었다.

출판단지로 이사

운영한지 5년, 다울리는 택지개발에 밀려 지금 이곳 출판단지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동안 함께 했던 회원들과는 헤어짐이, 출판단지에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암담함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찾아주었고, 의외로 교하신도시 통일전망대, 대화, 가좌지구에서도 올 수 있는 위치라 시간이 흐를수록 회원들이 많아졌다. 새로이 도입한 후원회원 제도에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기꺼이 가입해주었으며,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좋은 책을 많이 준비한 덕분에 신도시 교하지구가 생김과 동시에 이용자도 늘어났다.

출판도시로 이사하고 어려웠을 때 처음으로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도서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원을 받게 되면서 주변에 나보다 힘들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소식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도서관의 안정을 위해 정신없이 지내왔지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조금씩 주변 도서관 소식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협의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파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 활동 시작

파주시에 도서관 등록도 하고 있지 않았다가 작은도서관협의회(앞으로 작은협)에 나가기 전 도서관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아 등록했다. 회의에 참석해보니 파주시의 작은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았고 우리 도서관보다 사정이 어려운 도서관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주에서 매년 평가에 의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서류 알레르기가 있는 나로서는 평가지를 낼 자신이 없었다. 또한 굳이 그렇게 해가면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다. 어렵지만 여태껏 회원들과 잘해 왔는데……. 하지만 이사 후 일부러 찾아와야만 하는 도서관의 특징을 살리고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의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지원을 받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간다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책을 고정적으로 매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였다.

작은 도서관 평가를 받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관공서와 관계를 맺어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먼저 있었다. 평가서 양식을 받고 보니 웬 단어들 이 이리도 낯선지 나름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서관프로그램과 회계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자료를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지원을 받아야 하나?’라는 회의도 생겼다. 번거롭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해보는 서류, 빈칸 메우기지만 통계도 내야하고 이용자수를 적는 난도 있어 ‘이게 뭐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게 낯설고 ‘너무 형식적인 일에 내가 매달려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어볼 거 물어보며 간신히 칸 메우기를 하고 서류를 내며 생각했다. “내년부터는 차라리 받지 말자. 지원금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다행히 서류가 잘 되었는지, 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모여 심사단을 꾸리고 실사까지 하러 나왔다.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조금 긴장되기도 했다. 한 해는 그렇게 지원받아 계획대로 신간도 구입하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책도 구입했다. 물론 그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매월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간장을 태워가며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책을 구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행복한 일이었다. 지원받은 시기부터 아마 파주시의 도서관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말 트임이 시작된 것 같다. 물론 작은 도서관협의회 회의에 항상 나오는 담당자와의 만남도 있었다. 협의회에 참여했을 때 이미 도서관 담당공무원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꿈꾸는 교실은 매년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는 파주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액도 많아졌다.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해 우리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달라진 것도 많았다. 도서 구입을 안정적으로 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만족이 커졌다. 빼곡히 채워가는 서가의 책장을 보며 우리도, 이용자도 흐뭇해했다. 올해는 조금이지만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다.

지원을 통해 변해가는 작은도서관의 체계화

첫 해 어렵사리 작성했을 정도로 귀찮게만 생각했던 통계자료들이 도서관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면서 도서관 체계를 밟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끼리 약속하고 하면 되지 무슨 규정이야?’ 하며 투덜거리며 시작했던 꿈꾸는 교실 도서관 규정도, 모두가 머리 맞대고 앉아 우리에게 맞는 규정 항목을 따져가며 넣어보고 빼보면서 도서관 운영위원들도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에 없던 모임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이름을 바꾸니 한층 위엄도 서고 책임감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도서관리 규정도 만들어 서로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누가 보고도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치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도서관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도서관도 있는 듯해서다. 가끔은 이런 규정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도 있어 조금은 조심스럽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고 지원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거나 통계작업을 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꿈꾸는 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부터 자료나 회의는 체계화되어 있었다. 그것을 총 정리하여 우리의 일 년 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 금상첨화라는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역사가 되고 다른 도서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

도서관 담당 공무원과는 한 달에 한 번 꼭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의 때 만난다.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다. 도서관 정책이나 또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 현 상황 등을 이야기한다.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만남은 꼭 필요하다. 월 1회 회의를 통해 파주시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한 협조, 때로는 의견도 교류하며 도서관 학교처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생기기도 한다. 뜬금없이 내려오는 하달이 아닌 서로 간 소통을 하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사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형식적 지원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담당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행사를 거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항상 우리가 약자라는 생각으로 막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은 가신 듯하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연수를 하는데 여름연수 때는 함께 공통된 주제로 밤새워가며 토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야”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하지만 서로 반하는 토론 주제가 나오면 한 치의 양보

도 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좋은 협조자이다. 이런 만남을 통해 파주시 전반의 도서관정책을 바라보는 눈도 생겼다.

아쉬운 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데 있다. 뭔가 서로 통한다 싶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뜬금없이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때처럼 기운 빠질 때가 없다. 말 한마디에 통했던 사람들이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을 때의 허탈감. 제발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일정 정도 기간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 한 사람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 가느냐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내가 파주시에 살고 있어 모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을 동일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듯하다.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관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파주시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얼마 전 파주시에서 아파트도서관 지원을 위해 평가단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올해는 공립 작은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파주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이 많이 생길 예정이다. 처음 개관한 도서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서관을 지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다. 두 개의 도서관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뜻있는 사람들이 운영자로 나서 앞으로 잘되길 기원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 저마다 역할을 해나갈 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일에 작게

나마 내 스스로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는 활동이었다.

파주시는 파주 출판도시가 있는 시로서 '책 읽는 파주'를 지향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문화가 있는 곳, 책이 있는 곳으로서의 파주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진정으로 책 읽는 파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올해 4월에 발대식을 가진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는 3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 큰 윤곽을 잡고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동네방네 책 토론방 독서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어우르는 사업이다. 장소를 가진 사람들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동아리를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최소한 다양한 동아리 모임을 위해 가족단위의 동아리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리보다는 그동안 알차게 독서동아리를 하고 있던 모임들을 격려해 등록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아리들을 등록하여 앞으로 활동에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이웃과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은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은 사례들이 나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작은 동아리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느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수면 위만 건드리는 일이 되어 깜짝 이벤트 사업처럼 될 수도 있다.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에서 연구해야 할 일이다. 구성원들이 책과 관계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해봄 직하다.

올해 진행되었던 토론 리더교육과 우수 동아리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초석이 되어 2011년을 기대해본다.

마무리하며

과주시에서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행운이다. 첫째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려 애쓰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서이다. 가끔은 간섭하려 하는 것 같고 요구사항이 있어 불편하긴 하지만 언제나 옆에서 고민을 들어줄 자세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누군가 어떤 공식자리에서 작은도서관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누가 만들라고 했어? 만들어놨으면 알아서 해야지”라는 뉘앙스의 말을 던져 모두가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모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작은 상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마을의 공통 고민을 끌어안고 사람들과 밀착해서 지내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대책 없는 말이었다.

작은도서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과주시는 희망이 있다. 아쉬운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다.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결과에만 급급한 느낌이 들어 어느 때 형식을 갖추기 바쁘다. 좀 더 천천히 내실을 기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더 쏟았으면 싶다. 장기적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실 전문 인력인 사서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주시는 올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한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활동하는 사서의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다.

두 번째는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고민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든든한 일이다.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곳이 있다면 위안도 해주고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모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마다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같은 일을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세 번째의 희망은 파주출판도시가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도서관에 와서 “출판도시가 있어 부러워요.”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게 뭐 부러울 일인가 싶었는데, 지내고 보니 출판사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과 정보들이 우리 도서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행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책에 관한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무엇보다도 고마운 일이다.

네 번째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후원회원들이다. 작은도서관의 밑거름은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후원자들이다. 항상 도서관이 그 장소에 있어 미래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길 기원하는 후원회원들이 있어 작은도서관은 지속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도서관 운영자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가?’라는 회의에 빠졌을 때, 운영자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의 큰 역할이라고 본다. 한 명의 이용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를 온전히 개관할 수 있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일깨워주는 후원회원들이 있는 한 작은도서관은 영원할 것이다.

부록 1. 꿈꾸는 교실 2010년 운영 평가 서면조사서

2010년도 파주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서면조사서

2011년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 작은도서관 운영결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2010년 12월 05일(일)

※ 제출 기 한: 2010년 12월 17일(금)

- 도서관명: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대표자: 황수경)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12 2층
- 전화번호: 031-955-2625 (작은도서관 전용) ○ 팩스: 031-955-2624
- 작 성 자: 황수경
- 작성자 연락처: (휴대폰) 010-2315-3517 e-mail: bbanh@hanmail.net

1. [목적의 적합성]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지식정보제공, 문화발전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작은도서관 설립취지 또는 운영목적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 좋은 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책 읽기 문화를 만들어간다.
-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의 어린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어린이 책을 통해 어머니들의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증대시킨다.
-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 작은 도서관 만들기에 시와 주민과 함께 노력한다.

(너무도 당연한 직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 운영자는 다시 고민할 기회가 주어진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듯이 매년 처음의 마음은 잊지 않도록 다짐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주어진 문항에 얽매이지 않고 도서관의 활동과 연관된 의미들을 생각하며 정리하면 좋은 듯싶다.)

(2) 2010년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 및 운영방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꼼꾸는 교실 같은 경우 매년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모여 한 해 사업평가와 아울러 내년도 활동계획을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부분은 이 년 계획한다. 그 계획표가 모아지면 꼼꾸는 교실 1년 운영계획표가 나오는 것이다. 월별, 주별 계획표가 주어진다면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홍보기간을 적절히 할 수 있어 프로그램은 운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3) 봉사대상 인구 수: 일주일 150명

- 봉사대상 인구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적어주세요.
- 도서관에 일주일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왔다가 책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출판단지 내에 있어 고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출판단지 내에 있으므로 주말(토)에는 불특정 다수의 파주 시민보다는 다른 시, 도에서 많이 방문하여 가볼 만한 곳을 많이 물어본다. 출판도시 및 파주시의 다양한 행사 안내도 함께한다
- 단체 이용자들이 많다. 관내·외 다양한 단체이용자들이 많다. 때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전국 사서모임, 문헌정보과 학생들, 유치원·초등학생 단체가 다양하게 방문하며 출판도시를 견학 또는 다양한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4) 도서관등록신고 개관연월일: 2006년 10월 12일(실제 개관연월일: 2001년 6월 30일)

· 개관 후 작은도서관 연혁 및 주요사업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이 사업을 이 년에 한 번 정리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한사람 한사람 도서관을 위해 아꼈던 사람들의 노고와 참여했던 이용자들과의 동행은 생각하게 한다.)

- 2001년 6월 30일 문 여는 기념공연
문화교실: 사진/찰흙교실/짚풀공예/가족신문만들기/영화보기
전시회: 식물표본 전시회
강연: 우리자녀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 2002년 문화교실 운영: 자유미술/목공/역사/박물관학교/어린이함께기자 교육/독서상담시작
전시회 및 행사: 대보름행사/어린이날행사/우리들세상전시회/똥벼락공연 멀티동화보기/장파리고구마캐기
- 2003년 문화교실 운영: 영어교실/문학강좌/숲교실/방학프로그램진행
전시 및 행사: 학급문고살리기 행사/파주어린이책한마당 참여
- 2004년 문화교실 운영: 나만의책만들기/방학프로그램/
이야기교실 전시 및 행사: 벼룩시장/어린이날행사주최
- 2005년 문화교실 운영: 자연염색체험시작
전시 및 행사: 학급문고살리책판매행사/파주어린이날행사참여
- 2006년 문화교실 운영: 책이랑놀자/책 읽기숲/자원활동가교육시작
- 2007년 문화교실 운영: 일러스트교실/문화체험단밤활동개시/방학프로그램운영
6주년 기념행사: 여섯 번째 작은 전시회 '엄마가 그린 자연을 담은 이야기' 환경에 관한 책전시회 및 이상권 선생님의 '멧돼지가 기른 감나무' 출판기념회, 평화책 전시회, 도서관에서 1박 2일 시작(여름방학, 겨울방학)
- 2008년 문화교실 운영: 골목놀이시작/꿈지기모임결성/어린이사서교육/엄마사서교육 실시
도서관 학교 참여(자원활동가)
책 속에서 걸어 나온 닥종이 인형전
그림으로 꿈을 꾸다 전시회 (엄마미술)
꿈지기 인형극 공연 (출판단지 행사)
「고래가 그랬어」 토론방 꿈교친구들 정기 참여 글 실림
출판단지 책 잔치 참여
가을맞이 자원활동가와 부모를 위한 8차강좌

- 나만의 책 만들기 북아트 전시회/중앙도서관
 「등그렁등 등그렁등」 작가 김종도 출판기념회
- 2009년 회원 만남의 날 축제 진행
 - 문화프로그램: 방학특강/1박2일/체험학습/
 청소년을 위한 나와 직업 세계로의 짧은 여행 진행
 그림책 작가 김종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꼬마작가 8인전
 「애들아 이런 그림책 봤니?」 여행 중에 만난 여러 나라 그림책 전시회
 문학의 밤
 - 2010년 1월 꿈꾸는 교실 운영위원 2박3 일 연수(2009년평가 및 2010년 운영계획)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 2월 도서관에서 1박 2일 진행
 - 3월 일주일에 한 번 세계 언어로 만나는 여러 나라 책 이야기 시간 시작, 연극교실 시작, 책이랑 놀자, 골목놀이, 빛그림 이야기, 숲교실, 독서교실, 그리기 교실,동아리 모임 - 그림책모임, 동화모임, 고전모임, 청소년 모임
 - 4월 어린이 사서 교육 3차시 진행, 도서관 학교 참여
 - 5월 책잔치 참여
 - 7월 작은전시회 매월 진행 (손태과의 여행)
 - 8월 방학프로그램 진행, 작은전시회 (팝업북 전시)
 - 9월 작은전시회 (꼬마작가 전시)
 - 10월 문학의 밤 행사 (두 번째), 작은전시회 (책 속의 책)
 - 11월 유아미술 프로그램 새로 시작, 출판도시 책방거리 뚝책축제 진행, 도서관 학교 참여/독서토론 리더교육 참여
 - 12월 책 읽는 파주 동네책방 사업 진행 (4차시 강연 그림책 일기), 작은 전시회 (엄마에게)

2. [시설의 적정성]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적정성은 본의와는 다르게 주어진 사정으로 인해 형편이 다 다를수 있다. 위축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실을 기하는 활동들은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장소로 제한을 많이 받는다면 지역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너무 번거롭고 활동하기 힘들다.)

- (1) 작은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건물 명칭: 다섯수레 출판사
- (2) 작은도서관의 위치(건물 내 층수): 2층
- (3)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85.5m² 야외 테라스 35.1
- (4) 열람석: 40석 (작은도서관 1회 수용가능 총인원: 60명)
- (5) 2010년도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한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화장실 개, 보수
 - 야외 데크 도색작업

3. [자료의 성장] 작은도서관 활동의 근거는 자료입니다. 자료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 자료보유현황

(2010. 12. 05 현재)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11,000권	시창각자료 250점 기 타 200점	10종

(2) 자료구입계획 또는 자료관리지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지난 1년간 장서증가량: 권/월 평균 장서증가량: 권

(구입도서: 1,145 권/ 기증도서: 권)

(4) 도서구입 주기: 연 10회(월 1회)

(5) 자료의 관리 및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비치하고 기록하는 대장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도서등록원부, 기증도서목록, 구입도서목록, 대출반납대장 등)

- (6) 소장자료의 등록 및 관리 방법: · 수작업 · 전산
- (7) 소장자료의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사용 중인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프로그램명: 책꽂이)
 - 전산화 도입 시기: 2004년
 - 현재 DB구축 자료 수: 11,000권(현재 전체장서의 100%)
 - 향후 전산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8) 기타 자료 확충과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도서선정위원회 운영
 - 책 보수팀 운영

4. [인 력] 작은도서관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1) 사서자격증 또는 독서지도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이 있습니까?
- 자격증 보유자(직위): 자원활동가 (자격증명칭: 사서자격증)
- (2) 작은도서관 운영자 또는 담당자의 경력 및 도서관운영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 경력: 문화교실 운영자 - 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 도서관 학교 수료
 - 도서관 운영자 - 작은도서관 5년 경력/도서관 학교 수료
 - 도서관 상담관련 - 경력 8년
 - 자격증 보유현황: 독서지도사 자격증, 체험관련 자격증
- (3) 관리운영 인원 수: 총 7명
- (4) 자원봉사자 수: 총 10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운영 방법을 적어주세요.
 - 매년 도서관 학교를 이수한 후, 소모임 활동을 한다.
 -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 봉사한다.
 - 주 1회 소모임 진행한다. 봉사자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한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을 적어주세요.(관련 자료 제출)

구분	인원	주요봉사활동내용
지역주민(주부, 노인 퇴직자 등)	10	책 정리, 대어 및 반납, 청소 책 읽어주기, 소식지 발행,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사진 및 자료정리, 각 위원회 활동, 소모임 참여, 교육 참여
초·중·고 학생	15	어린이 사서 7명 포함, 사서교육 참여, 책 정리, 대어 및 반납, 도서관 관리, 신간안내
기타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리자, 자원봉사자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적어주세요.(전문교육, 세미나, 워크숍, 도서관학교 등)

교육명	기간	참여인원	주요내용
도서관 학교	4월, 11월	10명	1차 도서관 학교, 2차 도서관 학교 참여
활동가 연수 그림책 읽기	11월	3명 15명	토론진행자 교육 첫 그림책 찾기
기타			

(5)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 등 도서관운영 협의 조직이 있습니까?

· 예 (있다면 회의록 등 자료 제출) · 아니오

- 위원회 명칭: 꿈꾸는 교실 도서관 운영위원회

- 위원회 구성인원: 7명

- 위원회 주요활동: 도서관 운영관련 계획 및 검토, 평가, 프로그램 기획, 문화 교실 운영 도서구입 선정, 기타 도서관 봉사활동, 소식지 발행

5. [이용수칙]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합니다.

(1) 도서관 이용수칙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도서관 이용수칙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운영규정이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필요할 것 같아 마련하려 했지만 사례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용인의 장미도서관 운영 규정을 받아 우리에게 필요한 규정들을 정리하면서 도서관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조직들의 활동과 규제, 제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 너무 막연하지만 타 도서관 것을 참고하되 생각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고 운영규정이 보고용으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회에 다시 조직을 다지고 새롭게 단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참으로 좋을 일이다.

(2) 개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토요일은 4시)

(3) 휴 관 일: 일요일, 국가공휴일

(4) 도서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1인 대출책 수: 10권) · 아니오

(5) 대출회원 가입조건은 무엇입니까?

- 후원회원 가입

(6) 1회 대출기간: 7일

(7) 2010년 연간 자료이용

(2010. 12. 05 현재)

이용현황(입관자 수)		도서대출현황			도서열람현황 (도서관 내에서 이용한 책 수)		2010 연간 개관 일수
연 간 이용자 수	1일 평균 이용자 수	연간대출 인원 수	연간대출 책 수	1일 평균 대출책 수	연간이용 책 수	1일 평균 이용책 수	
6883(11월30 일 현재)	25명	915명	4736권	16권	14500권	50권	290 일

- * 1일 평균 이용자는 연 이용자를 개관일로 나눈 수치입니다.
- * 대출을 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이용(열람)책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6. [재정자립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재정보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1) 2010년 운영예산 집행내역(11월30일 현재)

(단위: 원)

구분	인건비	자료구입비	임대료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일상경비	기타	계
금액	8,300,000	8,719,000	5,500,000	5,187,000	2,762,000	5,538,000	1,100,000	37,106,000

- (2) 운영비 조달 방안: 후원회비, 후원금, 문화교실 수익
- (3) 자료구입비 조달 방안: 파주시, 경기도 지원, 후원회비, 책 후원
- (4) 작은도서관 후원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후원회원 수: 명
- 후원회 활동내용: 회비 납부/소모임 참여/행사 참여/프로그램 참
여/도서관 책 대여
- 통계부분의 사항은 꿈꾸는 교실은 회계프로그램과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전

산화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다. 마지막 통계를 기본으로 기장하면 되는 일인데 만약 전산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장하고 있는 서류들을 참고하면 된다.

7. [문화, 교육활동]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관(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독서교육, 문화교양강좌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까?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참여인원	주요내용
빛그림 이야기	주 1회	5명~50명	신간위주로 책 읽어주기
여러 나라 이야기	주 1회	5명~15명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로 된 그림책 읽어주기
빛책이랑 놀자	월 1회	15명	책을 읽고 독후활동놀이
골목놀이	월 1회	15명~25명	전래놀이 및 공동체놀이
학부모 강좌	년 6회	20명~30명	부모 대화 책 읽기 강좌

(2)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독서토론, 학습, 취미동호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까?

동아리명	구성연도	모임주기	구성원수	주요활동내용
꿈지기	2006년	주 1회	10명	책 읽고 토론 책 소개
그림책모임	2010년	주 1회	6명	그림책 읽고 토론
고전읽기	2010년	월 2회	6명	고전 읽고 토론
청소년 모임	2010년	주 1회	5명	즐거운 거리 찾기
어린이 사서	2010년	주 1회	6명	자원활동

8. [지속적 홍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1) 작은도서관 현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회원확보를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방법	횟수	대상인원	홍보내용 및 실적
언론보도	2	불특정다수	어름빙하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전시회
인터넷	다음카페 이용	불특정 다수	프로그램 참여, 이용문의 단체관람 문의
홍보유인물	2	파주시 고양시	빙하프로그램 홍보, 여러 나라 이야기 홍보
현수막	3	도서관 내, 출판단 지 내	전시회건 새로운 프로그램 홍보
지역행사참가등	3	전국	책잔치,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행	4	회원과 그 외	프로그램, 도서관소식

(3) 기타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회원들이 이웃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 문학의 밤, 작은 전시회
- 무료 프로그램 개발: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 연극교실

9. [기 타] 위의 질문사항 이외에 지역사회 작은도서관로서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사업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소외지역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빛그림 이야기와 찾아가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함.

10. [향후 발전방안] 향후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2011년 꿈꾸는 교실 운영 계획서

(1) 2011년 문화 프로그램 계획

- 1) 문화교실 활성화와 회원확대를 위해 홍보 및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구상

한다.

- 어머니 숲교실 운영(1년 프로젝트)
- 애니메이션 교실 신설(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으로)
- 프로그램 기획 양성자 교육(꿈꾸는 교실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활동가를 찾기 위한 강좌 개최, 수료한 사람에 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기)

- 청소년 자원활동가 교육

2) 여러 나라 책을 더욱 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월별 나라나 주제를 정해 책을 읽을 수 있게 전시, 참여 프로그램 개발

3) 다양한 전시회(꼬마작가전, 어른 미술 그림전)

4) 저학년 역사체험교실 진행

(2) 도서구입과 관리계획

1) 도서선정 운영위원회 활성화

- 매월 희망도서 구입을 심의하여 구입

- 정기적인 신간 구입

2) 폐간 및 분실도서에 대한 처리 계획

(3) 자원활동가 교육 계획

1) 정기모임 예정

2) 어린이 사서 - 2차시 교육 후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봉사자 교육 실시

(4)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사 참여

1) 책 읽는 파주 추진위원회 사업 함께 공유(동네책방 사업 참여)

2) 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학교 및 기타 사업 진행

3) 출판도시의 책방거리 사업 적극적 참여

4) 기타 연수, 관련 세미나 워크숍 참여

(5) 자료집 발간 사업

- 각 문화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면 타 도서관에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됨.

11. 지역사회 올바른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파주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민·관 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었다. 특히 2010년은 도서관 정책팀이 파주시 평생학습과로 옮겨지며 더욱 활기를 띠었던 한해였다. 파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아파트도서관은 첫해부터 지원해준 사실은 고무적인 이야기 본다. 그 외에도 공공작은도서관이 소외된 지역에 많이 생기고 활발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2011년에는 이미 만들어놓은 도서관이 실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원되어, 만들어 놓았을 뿐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 들렸으면 한다. 작은도서관의 이월으로 협조 가능한 이들은 작은도서관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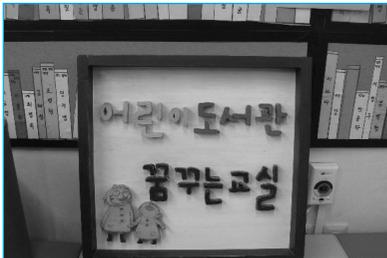
도서관 내부



출판도시 외부 간판



도서관 아외 데크 간판



도서관 내부 간판(이동식)

부록 2.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자료 관리 규정

- 제정 2009년 5월 12일
-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꿈꾸는 교실 자료의 선정,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등 외부로부터 수수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오손, 훼손된 자료 또는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오손, 훼손 자료 등 폐기, 이관, 교환 등으로 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옮겨 간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꿈꾸는 교실 전 자료에 적용된다.

제2장 꿈꾸는 교실 자료선정위원회

제4조[꿈꾸는 교실 자료선정위원회]

꿈꾸는 교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구성 및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꿈꾸는 교실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2.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약간 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장서 및 기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가. 구입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연속간행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수증 및 교환 자료의 소장여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교환,이관 대상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나.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손망실 처리에 관하여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대출자료 중 미회수된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
 - 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
 - 다.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1. 회의는 신속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시로 수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 소집 3일 전에 소집일시 및 토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자료선정을 위한 회의일 경우 해당 심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배포한다.

제3장 자료 선정 및 수집

제11조[일반자료]

1.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최신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이용자의 희망 자료는 꿈꾸는 교실 자료 구성목적 및 출판연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우선 선정한다.

제12조[간행물 자료]

이용 빈도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파악하여 수집한다.

제13조[기증자료]

기증자료는 꿈꾸는 교실 자료로서의 보존, 관리 및 적정수준 또는 이용가치,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장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자료의 불용결정

제14조[심의]

꿈꾸는 교실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위

하여 꿈꾸는 교실 자료 중 불용자료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일반적 기준

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오손, 훼손된 자료

다.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라. 대출회전율이 떨어지는 자료

2. 연속간행물 중 3년이 경과한 자료

3. 회수불능자료

4. 소재 미확인 자료

제5장 자료의 구성원칙

제15조[구성비율]

어린이 도서와 일반도서의 구성비율은 8:2로 한다.

제16조[자료의 수집방법]

1. 구입을 통한 수집

가. 구입도서: 주제별 도서 선정 기준에 의거, 인터넷과 현장 수서 등을 실시하여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심의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나. 희망도서: 신청된 희망도서를 인터넷과 현장수서를 실시하여 구입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후 2주 간격으로 비치희망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아래의 선정제외기준

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다. 희망도서 선정제외 기준

- 1인당 1회 3권을 초과하는 신청도서는 선정 제외한다.
- 발행년도 3년 이상 된 도서는 선정 제외한다.
- 비도서는 제외한다.
- 무협지, 인터넷 소설은 제외한다.
-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집은 제외한다.
- 소장도서 및 중복신청도서는 제외한다.
- 이용도가 낮은 전문도서는 제외한다.
- 불량도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도서는 제외한다.

라. 수증을 통한 수집: 수증받은 자료는 심의 목록을 작성한 후, 아래의 선정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 회사나 기관의 역사, 교지 및 홍보성 도서는 제외한다.
- 운영사례, 연차보고서, 연수사례, 논총, 논문, 백서 등은 제외한다.
- 이용률이 거의 없는 도서는 제외한다.
- 발행연도가 5년이 지났거나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도서는 제외한다.

부록 3.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운영 규정

- 제정 2009년 5월12일
-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취지]

도서관은 과주지역의 주민들에게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된다.

제4조 [기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목적]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의기구이다.

제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전체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기 둔다.

1. 전체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문화교실 강사, 자원 활동가 실무위원 도서관 운영에 열의를 가진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장은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1.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제반 사업을 관할하고 책임지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한 조직의 확대 관리를 기획한다.
 - (2)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한다.
 - (3) 기획팀장은 도서관 제반업무를 기획 담당하고 관리한다.
 - (4) 교육팀장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한다.
 - (5) 도서팀장은 도서관 자료관리 및 자원 활동 내용을 담당하고 관리한다.
 - (6) 감사는 도서관 회계감사 및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한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을 실행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구성]

전체운영위원회 회의와 실무회의로 구성한다.

1. 전체 운영위원회

- 1) 전체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2회로 한다.
- 2) 의결사항은 2/3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2. 실무회의

- 실무자들의 협의로 진행한다.

제9조 [기능]

1. 도서관의 정기 사업계획과 평가를 심의 의결한다.
2. 도서관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도서관 활동가를 인준한다.

제4장 도서관 모임

제10조 [구분]

도서관 모임은 자원 활동가 모임, 수서모임, 어린이 동아리 모임으로 한다.

제11조 [모임회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모임의 사업을 논의하고 평가한다.

제5장 회 원

제12조 [구분]

도서관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13조 [정회원]

월 10,000원 이상 후원하며 회원신청서를 가입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한 가족 단위로 회비를 낸다.
2. 도서관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3.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 활동가]

자원 활동가는 도서관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갖는다.

1. 자원 활동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쓰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며 자원활동가 교육 시 꼭 참여한다.
2. 도서관의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제6장 자료의 수집과 정리

-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7장 이 용

제23조 [대상]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25조 [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 다만 도서관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26조 [대출]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며 대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대출과 반납은 도서관 개방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도서관 회원증을 자료 대출 시 제시한다.
3. 대출은 1인 10권 일주일간으로 한다.
4. 연체 시에는 1~7일까지는 책 대여 권수를 3권으로 한다. 7일 이상은 당일은 대여하지 않고 1일 이후 정상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27조 [이용자 준수 사항]

다음과 같은 도서관 이용자 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1. 만 6세까지의 어린이는 부모를 동반하여 입장한다.
2. 정숙과 청결을 유지한다.
3.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4. 도서관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며 필요한 부분을 오리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자료의 변상]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물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맞추어 현금 변상할 수 있다.

제29조 [재정]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도서관 정회원 후원회비
2. 후원회원의 후원금
3. 문화교실 수입금
4. 행사 수입금

제8장 사업의 운영

제30조 [목적]

좋은 책을 통해 건강한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며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서 지역의 어린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 활동가 활동을 증대시켜 문화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제32조 [사업]

도서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1. 회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운영한다.(이야기교실, 영상동화, 영화상영, 책 읽기 활동, 독서 멘토 및 상담진행, 부모교육)
2. 전시회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관한다.
3. 베풀시장을 운영한다.
4.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3조 [세부사항]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 [세부사항]

본 규정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35조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Ⅲ 도서관을 돕는 시민참여 활동

-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사례 -

정종모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다

2010년 현재 인구 35만 명인 파주시에는 본관인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의 분관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교하도서관, 직영 공립 작은도서관 한 곳, 민간위탁 공립 작은도서관 네 곳이 있다. 또한 곳곳에 공공도서관 설립이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을 정도로 파주시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탄탄하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 동네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섰다. 파주시에는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계가 있었다. 시청 소재지인 금촌에 유일하게 금촌도서관이 있었고 접경지역인 문산읍에 문산도서관이 들어선 정도였다. 파주시의 남쪽과 북쪽에 공공도서관이 각각 한 곳씩 있다가 마침내 파주시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문화 소외지역인 법원읍에 도서관이 생겼다.

도서관 유치와 부지 선정에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은 물론이고 동

네 유지들이 애를 썼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법원도서관이 생기기 전, 도서관 하나 없는 동네에 그나마 지역의 도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독서실이 있었다. 그곳은 접근성이 아주 좋은 시내에 위치해 있었다. 서가와 공부방이 있는 그곳은, 대출은 안 되고 오백 원의 이용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문산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의 관외 대출이 되지 않고 주로 학생들과 성인들의 시험공부를 위해서 존재한 그곳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용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상주 인력이 없어서 건물 관리인이 이따금 둘러보는 정도였다. 게다가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독서실 옆에 있던 도의원 개인 사무실 직원은 불친절하기 일쑤였다. 운영시간에 맞춰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걸핏하면 닫혀 있었다. 독서실 이용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신경을 덜 쓰게 된 것 같았다. 이용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운영비는 고정으로 지출되면서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과주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런 공간이라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운 마음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동네에 공공도서관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디에 조성되는지 궁금했다. 포도밭이 있던 초리골 입구인 동네 외곽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1997년 11월 말 법원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독서실은 문을 닫았고, 새로운 도서관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공부방이자 쉼터가

되었다.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이 되다

도서관을 매일 이용하다 보니 파주시 도서관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었다. 사회 진출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주로 일반자료실을 이용했지만 도서관 운영의 일상들이 구석구석 눈에 들어왔다.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위주의 업무, 비전문인력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 사서직원들의 고충, 도서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등을 저절로 알게 됐다.

도서관 일상을 잘 알다 보니 도서관답지 않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일부 직원들은 나를 도서관 운영의 조력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염려했던 모양이었다. 심지어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경계해야 할 인물'로 낙인찍어 놓고 관리하다가 들통이 난 일도 있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긴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 자료, 이용자 문화, 요구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한 도서관 백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1기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알고 보니 조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몇가지 사정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늦게나마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1기

도서관 운영위원 모집 당시에는 사정상 참여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으레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이 행정 관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지역 토박이로서의 장점을 살려, 소란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숙을 당부하거나 예의를 지키고 도서관 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면서 이용하도록 늘 타일렀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몸을 다쳐, 한 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몸이 회복되어 다시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마침 2기 운영위원 모집 공고가 났다.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각 계의 전문가와 더불어 각 도서관의 이용자 대표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 대표위원은 각 도서관(중앙관 및 분관)의 00명 이상의 이용자 추천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봉사활동,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안하여 신청받은 위원을 평가하여 위촉토록 하고 있다. 시민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졌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 이용자로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던 차에 이용자 대표 운영위원 추천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법원도서관 이용자 대표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기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위촉되기에 이르렀고, 2기부터 4기인 지금까지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이 되다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이용자 대표로 이루어진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작은도서관(당시에는 문고라고 함) 평가였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평가일에 방문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직접 보아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주소를 확인하고 지적도를 복사해서 일일이 지도에 표시하고 며칠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서울보다 넓은 파주시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로 인구밀집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운영주체, 운영시간, 운영방법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별 서비스가 덜 미치는 문화소외지역인 파주시 북쪽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 작은도서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작은도서관 현황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운영위원으로서 중앙도서관 개관 행사(2005년)에 참석했을 때,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으로부터 회원 가입 신청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자는 생각에 회원가입을 하게 됐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4년 도서관학교 수료생 중심으로 뜻 있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협력해서 만든 협의체이다. 도서관학교의 기획부터 평가, 그리고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나갔다. 창립을 위한 첫 모임은 2005년 1월 금촌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당시 11명이 참석해서 ‘파주시 문고 활성화를 위한 모임 구성에 관한 건’을 토론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회장에 하안초록어린이도서관의 정종순 관장, 부회장에 책타래도서관 김선희 관장과 봄싹도서관 성현숙 팀장, 총무로 동화 읽는 어른모임의 임현주 회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임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협의회 모임에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하안초록어린이도서관에서 2차 회의를 한 후, 드디어 2005년 4월 20일 중앙도서관에서 12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초대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합니다. 봄꽃 아름다운 즈음에 파주시에 도서관의 작은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파주 시민들의 가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어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창립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셔서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칙에선 ‘작은협은 파주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설립과 발전, 연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우리 마을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파주시와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를 위한 도서관학교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에 대해 도움을 나누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활동지원 사업, 정책입안 및 지원·연대 사업, 문화팀 구성 및 찾아가는 문화체험 사업, 십시일반-책 나누기 사업, 도서관학교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활동 지원 사업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세우는 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무와 활동 프로그램, 자원 활동가의 조직과 교육을 지원한다.

② 정책 입안 및 지원, 연대 사업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도서관운동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하여 실천한다.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파주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지평을 넓힌다.

③ 문화팀 구성 및 찾아가는 문화체험 사업

작은도서관 단위에서 하기 힘든 문화체험 활동 및 빗그림 영상사업

등을 작은협 단위에서 지원하고 실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내용을 전수한다.

④ 십시일반 - 책나누기 사업

도서관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책을 후원받아 나누는 일을 한다.

⑤ 도서관학교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

상반기에 자원 활동가를 위한 기초 문화 연수, 여름 연수, 하반기 도서관학교 등을 기획하여 도서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운동의 연대 폭을 넓힌다.

과주시와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작은도서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다.

도서구입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까지 작은도서관 지원 규모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엄격한 조사가 필요했다. 이틀 또는 사흘간 진행되는 작은도서관 현지조사를 다니면서 평가위원들은 각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을 확인하고 평점을 매긴다. 최종적으로 평가

위원별 작은도서관 평점을 확인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후 합산하여 지원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원할 곳과 지원에서 배제시켜야 할 곳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공공도서관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평가지표를 들고 서면 조사지를 제출한 작은도서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갖게 한다. 지원에서 탈락되는 곳도 있고 지원의 내용이 달라지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적 성격을 가지고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해가려고 하는 곳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했다.

작은도서관 평가를 위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치는 동안 작은도서관 현황이 한 눈에 들어왔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록 주체는 아파트, 교회, 개인으로 크게 구분된다. 평가 당시 30~40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이 현재는 22곳으로 줄어들었다.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33㎡, 1000권, 6석)만 충족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예배당 한쪽에 서가를 마련해 놓고 등록신고를 한 곳도 있었다.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등록하는 경향이 강했다. 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를 지원해 준다는 소문도 작용했다. 비치된 책은 오래된 책이거나 기증받은 책이 많았고 특정 종교 관련 도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중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운영은 부실해져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교회의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교회도 있었다. 교회 신도들인 젊은 주부들이 자원

봉사자가 되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곳은 운영도 잘 되고 이용자들의 발길이 꾸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운영자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이용자를 끌어당기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도 했다. 시설과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도서관 정신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즉, 우수한 작은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했다. 과주시에서 평가기준 초안을 만들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검토하였다. 평가절차를 분명히 공론화하고,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 2-3일에 걸쳐 온 종일 위원들이 작은도서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평가하였다.

처음에는 평가위원이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에 신뢰하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도서관으로서 합목적성과 지속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라는 부분에 신뢰가 높아졌다. 그래서 각 작은도서관은 평가기준에 준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올해로 6년째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운영일지 하나 없던 곳들이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이용자 분석 데이터까지 체계적으로 갖춰놓은 것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 민간의 작은도서관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지역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에 맞게 운영해가는 모습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실감했다.

평가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했다.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작은도

서관의 위치를 옮기는 곳도 있었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폐관 신고도 하지 않는 곳도 생겼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실사를 권고하고 감독을 요청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파주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금은 22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수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도서구입비나 운영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큰 틀에서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민·관 협력 사례

먼저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안목을 넓혀준 것은 도서관 사서직원들의 역할이 컸다. 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주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워크숍, 작은도서관 종사자 연찬회 등과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파주추진협의회 참여 등이 그렇다. 대개의 경우 공무원만 참석하고 마는데, 워크숍 등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아갈 수 있었다. 도서관은 공공재이다. 특히 도서관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했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한다. 파주시 도서관의 경우는 민주적 소양과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준비되고 깨어 있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사서직 공무원들은 도서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 추진 과정이 힘들고 귀찮지만 도서

관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경직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 특성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낸다.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식 정보서비스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

과주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협의회의 민·관 협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실무회의이다. 상호 동반관계를 발휘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행사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도서관학교 개최, 도서관 벤치마킹, 행사 참가 등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실무회의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은 작은도서관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여한다. 그리고 계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문턱을 넘으며 회의를 함께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작은도서관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이다. 회의에 참석해서 작은도서관의 근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얘기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실무회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2. 도서관학교

도서관학교는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인식 확대,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에

올바른 도서관 문화 정착의 목적을 가지고 개최한다. 도서관학교는 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작은협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서로 토론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도서관학교는 중앙도서관 주최, 작은도서관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부강사(도서관 및 독서문화 전문가)와 내부강사(공공도서관 사서, 작은협 회원 등)를 섭외하고 파주시 우수 작은도서관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생생한 현장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도서관 벤치마킹

2009년 작은도서관협의회 내에 정책팀이 구성됐다. 마침 파주시에서 2010년을 ‘책 읽는 도시 파주’로 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2010년 ‘책 읽는 도시 파주’ 선포에 즈음하여 민·관이 협력해서 책 읽는 도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견학하는 계획을 세웠다. 김해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파주시의 도서관 정책을 비교 모색함으로써 시민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책 읽는 도시 파주’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작은도서관 종사자, 도서관 운영위원, 시의원, 파주시 도서관 직원 등이 함께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추진 배경, 운영 현황 및 역점 사업 등 도서관 정보정책을 청취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견학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협의회는 김해시 도서관정책팀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벤치마킹 계획을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참여인원을 점검하고 간단한 먹

을거리와 벤치마킹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파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자료를 준비해주고 차량 지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김해시의 정책이 투영되는 우수한 사례를 통해 '책 읽는 도시 파주' 만들기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4. 행사 참가

관외 행사로는 2007년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 참가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이다 보니 공공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참가 지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각각 '단독으로 참가할 것인가, 공동으로 참가할 것인가'를 놓고 공공도서관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난하게 계속됐다. 결국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운동'이란 주제에 맞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공공도서관은 차량과 리플릿 제작비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우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홍보자료와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스는 함께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홍보했다.

이 행사 참가를 계기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존재감과 연대감을 확인하고 동반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서로가 성장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관내행사로는 중앙도서관에서 매년 펼치는 동아리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평생학습축제 등 도서관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방향과 남은 과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6년이 되었다. 처음 만들어진 때에 비해 참여 도서관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소수 몇몇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작은도서관 사정이 각각 다르다 보니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고 뭉치게 하는 동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작은도서관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정보를 나누는 수준에서 개별 작은도서관들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 머무른 면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열악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법을 고민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12차시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서 문화팀을 구성했고, 수강생들을 자원 활동가로 육성시켜 개별 작은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용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의도한 만큼 성과는 크지 않았다.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표성 확보이다.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포괄하고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1년 작은도서관 방문상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게 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협의회의 협력 체계를 더욱 다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작은도서관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의 미래와 비전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운영실무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급해주어야 한다. 신설 작은도서관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법제화 정비에 공공도서관과 함께 공동으로 진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정책 환경의 개선과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설립 이념과 사회적 역할 및 기능에 주목하면서 관련 법령(조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경기도도서관총서 6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011년 2월 25일 발행

지은이 | 윤명희 · 이영옥 · 심승희 · 황수경 · 정종모

발행처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 23번길 68(신흥동 123-69)

연락처 | Tel. 031)249-5237 Fax. 031)246-4021

제작 · 편집 | 미래기획

- ※ 이 책의 판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031)249-5237로 연락주십시오.
- ※ 총서의 원문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에서 서비스됩니다.

ISBN 978-89-93395-22-8 14010

978-89-93395-06-8 (세트)



